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제2조에 대한 해설서

---

생명권

2021년 12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request to reproduce or republish a translation](#)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Case-law] - [Case-law analysis] - [Case-law guides]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일러두기 .....	5
<b>I. 일반 고려사항 .....</b>	<b>6</b>
A. 제2조의 해석.....	6
B.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 .....	6
C. 사망에 가까운 상황에서 제2조의 적용 가능성 .....	6
<b>II. 생명 보호 .....</b>	<b>8</b>
A.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본질 .....	8
B.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범위 .....	8
C. 상황별 생명 보호.....	9
1.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치명적 힘의 행사로부터 인명 보호.....	9
2. 자해에 대한 인명 보호 .....	11
3. 환경 또는 산업 재해로부터의 인명 보호 .....	12
4. 의료 관련 상황에서의 인명 보호.....	13
a. 일반 인구.....	13
b.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취약계층 .....	15
5. 사고 상황에서의 인명 보호.....	16
D. 시간적 제한.....	17
1. 생명의 시작 .....	17
2. 생의 마감에 관한 문제 .....	18
a. 안락사 .....	18
b. 연명치료 중단.....	18
<b>III. 고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b>	<b>20</b>
A. 사형 .....	20
1. 협약 제6의정서와 제13조를 고려한 협약 제2조제1항의 해석 .....	20
2. 범죄인 인도 및 추방 사건에서의 제2조에 따른 국가 책임 .....	20
B. 국가 대리인에 의한 치명적 힘의 행사 .....	21
1. 증거 평가.....	21
a. 입증기준 .....	21
b. 입증책임 .....	22
2. 국가 대리인에 의한 치명적인 힘의 행사로부터 인명 보호.....	23
a. 법체계 .....	23
b. 국가 대리인의 훈련 및 자격 검증 .....	23
c. 실제 사례 .....	24
3. 힘의 행사에 대한 허용된 예외 .....	24
a. 적용될 심사기준 .....	24
b. 일반 접근법 .....	25
i. 국가 대리인의 행동 .....	25
ii. 작전 계획 및 통제 .....	26
iii. 실제 사례 .....	26
C. 특별한 상황.....	27

1. 특정한 체포술 사용으로 인한 사망 .....	27
2. 구금 중 사망.....	28
3. 초법적 살인 .....	28
4. 치안유지 또는 군사 작전 .....	28
5. 실종.....	29
a. 사망 추정 .....	29
b. 추정된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	30
c.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30
6. 국가 대리인이 개인 자격으로 저지른 살인.....	31
<b>IV. 절차적 의무.....</b>	<b>32</b>
A. 절차적 의무의 범위 .....	32
B.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사이의 관계 .....	33
C. 조사의 목적.....	33
D. 조사의 형태.....	33
E. 조사의 성격과 정도 .....	34
F. 조사 기준 .....	34
1. 독립성 .....	34
2. 충분성 .....	36
3. 즉각성과 합리적인 신속성 .....	37
4. 공공 감시와 가까운 친척의 조사 참여 .....	38
G. 기소, 제재, 배상 관련 문제 .....	39
H. 절차적 의무의 재개 .....	40
I. 젠더 기반 폭력 및 증오범죄에 대한 조사.....	41
J. 국경 밖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절차적 의무.....	41
K.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절차적 의무 .....	42
L.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절차적 의무.....	43
1. 일반 원칙.....	43
2. 실제 사례.....	45
a. 의료과실 혐의에 관한 사건 .....	45
b. 사고에 관한 사건 .....	46
<b>인용 판례 목록 .....</b>	<b>47</b>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ECHR 2016).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 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I. 일반 고려사항

### 협약 제2조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본 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방지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 HUDOC 키워드

추방 (2) - 범죄인 인도 (2) - 적극적 의무 (2)

생명 (2-1) - 사형 (2-1); 법이 정한 (2-1); 접근가능성 (2-1); 예측가능성 (2-1); 남용에 대한 보호조치 (2-1); 관할 법원 (2-1) - 효과적인 조사 (2-1)

힘의 행사 (2-2) - 절대적으로 필요한 (2-2);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보호 (2-2); 합법적 체포 (2-2); 도주방지 (2-2); 폭동 또는 반란 진압 (2-2)

## A. 제2조의 해석

1. 제2조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접근법은 인간의 보호를 위한 수단인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협약의 보호조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되도록 협약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한다(*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46).

2. 제2조는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의 하나로, 평화 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어떠한 의무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2조는 제3조와 함께 유럽평의회를 설립한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를 명시하고 있다(*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174). 따라서, 제2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47).

## B.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

3. 제2조는 법에 따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일반 의무와 예외 목록으로 한도를 정한 의도적인 생명 박탈 금지의 두 가지 실체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Boso v. Italy* (dec.)). 제2조의 근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협약 제2조는 실체적 권리의 침해 혐의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절차적 의무 또한 포함한다(*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29).

## C. 사망에 가까운 상황에서 제2조의 적용 가능성

4. 재판소는 생명권이 침해를 주장한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협약 제2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재판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행사된 힘의 정도와 유형, 부상의 성격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 대리인의 행위가 그 성격상 청구인이 생존하더라도 청구인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경우, 국가 대리인에 의한 힘의 행사가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협약 제2조 위반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Makaratzis v. Greece* [GC], § 55; *Soare and Others v. Romania*, §§ 108-109; *Trévalec v. Belgium*, §§ 55-61). 국가 대리인에게 폭행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모든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는 제2조 대신 협약 제3조에 따라 심사가 수행될 것이다(*Makaratzis v. Greece* [GC], § 51; *İlhan v. Turkey* [GC], § 76).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잠재적인 치명적 공격에서 생존한 청구인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행위자에 의한 힘의 행사에 관한 사건에서 적용한 것과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했다(*Yotova v. Bulgaria*, § 69).

5. 재판소는 또한 사건 정황상 국가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협약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L.C.B. v. the United Kingdom*, §§ 36-41, 백혈병을 앓고 있는 청구인에 관한 사건; *G.N. and Others v. Italy*,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인 간염을 앓고 있는 청구인들에 관한 사건;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다양한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청구인들에 관한 사건; *Oyal v. Turkey*, 청구인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던 사건; *Aftanache v. Romania*, § 53, 의료진이 위태로운 상태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인슐린 치료를 거부했던 사건, 그리고 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Brincat and Others v. Malta*, § 84, 정부에서 운영하는 선박수리장에서 일했을 때 석면에 노출된 전 직원인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판소가 청구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석면 노출과 관련된 희귀암 진단의 불가피한 전조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6.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인정한 경우 비록 이러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을 제2조에 따라 심사했다(*R.R. and Others v. Hungary*, §§ 26-32, 청구인들이 증인보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에 청구를 제기한 사건;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 93-94 가해자가 청구인의 방문을 도끼로 부수려고 하면서 청구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건,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 30-36, 청구인이 신문기사로 인해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청구를 제기한 사건).

7. 마찬가지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Alkin v. Turkey*, § 29; *Çakmakçı v. Turkey* (dec.), § 32; *Fergec v. Croatia*, §§ 21-24; *Kotelnikov v. Russia*, § 98; *Cavit Tınarlıoğlu v. Turkey*, § 67; *Marius Alexandru and Marinela Ștefan v. Romania*, § 75) 또는 환경 재해(*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 155)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행히 사고에서 살아남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협약 제2조에 따라 심사했다. 재판소의 심사 원칙은 이러한 상황에서 (a) 문제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관련자의 생명을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b) 문제의 활동에 의해 입은 부상이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는 경우 제2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관련 위험 또는 부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 139-145).

8. 심리적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던 *Jeanty v. Belgium*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생명을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동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은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제2조가 이 사건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0).

9. 실제로, 재판소는 최근 당사자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생명을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생존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해를 유발하는 활동이나 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제2조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Tërshana v. Albania*, § 132; *Lapshin v. Azerbaijan*, § 71).

## II. 생명 보호

### 협약 제2조제1항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 HUDOC 키워드

적극적 의무 (2) - 생명 (2-1)

### A.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본질

10. 제2조제1항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관할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 130). 넓은 의미에서, 이 적극적 의무는 (a) 규제체계를 수립할 의무와 (b)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의무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 B.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범위

11. 재판소는 관할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가 공적 활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 130).

12. 따라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제2조에 따라 적극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 보건의료와 관련된 상황(*Calvelli and Ciglio v. Italy* [GC]; *Vo v. France* [GC])
- 산업 재해 또는 환경 재해를 포함한 위험한 활동과 관련된 상황(*Öneryıldız v. Turkey* [GC];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Brincat and Others v. Malta*; *M. Özel and Others v. Turkey*)
- 선박(*Leray and Others v. France* (dec.)), 기차(*Kalender v. Turkey*), 건설현장(*Pereira Henriques v. Luxembourg*), 운동장(*Koc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또는 학교(*İlbeyi Kemaloğlu and Meriye Kemaloğlu v. Turkey*)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상황
- 도로 안전(*Rajkowska v. Poland* (dec.); *Anna Todorova v. Bulgaria*), 응급구조 서비스 제공(*Furdík v. Slovakia* (dec.)) 또는 심해잠수작업(*Vilnes and Others v. Norway*)과 관련된 상황
- 국가시설에서 보호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및 지원 제공과 관련된 상황(*Nencheva and Others v. Bulgaria*;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Dumpe v. Latvia* (dec.))

국가가 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의 안전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Paşa and Erkan Erol v. Turkey*; *Albekov and Others v. Russia*), 불발탄이 있는 사격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독하지 못한 경우(*Oruk v. Turkey*) 및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경우(*Osmanoğlu v. Turkey*; *Dodov v. Bulgaria*)와 관련된 상황에도 적극적 의무가 적용된다.



13. 청구인의 남편이 휴양지에서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Ciechońska v. Poland*, § 67).

14. 그러나 재판소는 여러 차례 협약 제2조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서 모든 개인에게 절대적인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당사자가 자신을 부당한 위협에 빠뜨린 사고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특히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Molie v. Romania* (dec.), § 44; *Koseva v. Bulgaria* (dec.); *Gökdemir v. Turkey* (dec.), § 17; *Çakmak v. Turkey* (dec.)).

## C. 상황별 생명 보호

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중 일부 상황이 아래에 언급되어 있다.

### 1.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치명적 힘의 행사로부터 인명 보호

16. 재판소는 협약 제2조가 명확히 규정된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국가기관의 적극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결했다(*Osman v. the United Kingdom*, § 115; *Branko Tomašić and Others v. Croatia*, § 50).

17. 하지만, 현대 사회의 치안 유지와 관련된 어려움, 인간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 우선순위 및 자원을 고려해야 하는 운영상의 선택을 참작할 때,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국가기관에 불가능하거나 불균형한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명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해당 위협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적 조치를 시행할 협약상의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Osman v. the United Kingdom*, § 116; *Choreftakis and Choreftaki v. Greece*, § 46).

18.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 제5조 및 제8조에 포함된 보장을 포함해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적법절차와 그 밖의 보장을 완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Osman v. the United Kingdom*, § 116).

19. 적극적 의무가 발생하려면 국가기관이 식별된 개인 또는 개인의 생명에 대한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했을 당시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러한 위협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는 점과, 국가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위협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Mastromatteo v. Italy* [GC], § 68;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 55).

20.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2조에 따라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결과의 의무가 아니라 수단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관할기관이 행동 의무를 촉발하는 생명에 대한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인지한 후 식별된 위협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 대응한 상황에서는 해당 조치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반면,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협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평가는 위협이 있었기에 요구되는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의무의 필수 요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가 제2조에 따른 이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심사는 국내기관이 수행한 위협 평가의 적절성과 행동 의무를 유발하는 관련 위협이 식별되었거나 당연히 식별되었어야 할 경우 시행된 예방적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Kurt v. Austria* [GC], § 160).

21. 재판소는 청구인 측에서 국가기관이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을 생명에 대한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재판소는 이 문제가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Osman v. the United Kingdom*, § 116). 또한, 재판소는 사후 지혜의 잣대로 사건을 재검토하는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실제로 발생한 특정 사건의 경우 관련 시점에 관할기관이 알 수 있었던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Kurt v. Austria* [GC], § 160).

22. 재판소가 국가기관에서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의 존재를 관련 시점에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는 점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Kurt v. Austria* [GC], § 211; 또한 10살 아동이 교사가 없는 자리에서 같은 반 학생과 싸우다가 기존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Derenik Mkrtchyan and Gayane Mkrtchyan v. Armenia*, §§ 59-60 및 다른 상황, 즉 자살과 관련하여 *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 131-132 참조).

23. 재판소는 국가가 다음 상황에서 치명적인 행위의 잠재적 대상으로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재소자의 살인(*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57)
- 가정폭력(*Branko Tomašić and Others v. Croatia*, §§ 52-53; *Opuz v. Turkey*, § 129 *Tkheldze v. Georgia*, § 57)
- 형사절차에서의 증인 보호(*Van Colle v. the United Kingdom*, and *A and B v. Romania*, § 118);
- 분쟁지역에서의 살인(*Kılıç v. Turkey*, § 63; *Mahmut Kaya v. Turkey*, § 88)
- 군 복무 중 징집병 살해(*Yabansu and Others v. Turkey*, § 91)
- 납치(*Olewnik-Cieplińska and Olewnik v. Poland*, § 125)

24. 재판소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정 맥락과 관련하여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사건에서 상기 원칙을 적용했다.

- 교도소로부터 외출 중이거나 준구금 상태의 재소자가 범한 살인(*Mastromatteo v. Italy* [GC], § 69)
- 허가부 가석방으로 풀려난 살인 전과자가 범한 살인(*Choreftakis and Choreftaki v. Greece*, §§ 48-49)
- 비번인 경찰관이 범한 살인(*Gorovenky and Bugara v. Ukraine*, § 32)
- 의뢰인의 정신질환자 남편에 의한 변호사 살인(*Bijakaj and Others v. Croatia*, § 121)
- 테러범에 의한 대규모 인질극 중 자행된 살인(*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482-492; 이와 대조적으로, *Finogenov and Others v. Russia* (dec.), § 173).

25. 최근의 한 사건에서, 국가기관은 학교 총격사건을 저지르기 전 인터넷에 구체적인 위협 문구는 게시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안전하게 총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진을 게시한 학생의 총기를 사전에 압수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총기 사용이 생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유 위협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가 총기의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용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조치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했다고 강조했다(*Kotilainen and Others v. Finland*, § 88).

26. *Ribcheva and Others v. Bulgaria* 사건은 계획된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법 집행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친척인 법 집행관을 위협 인물에 대응하는 전문가로 작전에 참여시키기로 한 경우, 이러한 작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서 작전 참여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적극적 의무가 국가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확립된 판례법에 따라 이러한 적극적 의무(제2조제1항)에 관한 합리성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할 소극적 의무(제2조제2항)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판단재량이 없는, 엄격히 비례적인 힘의 사용). 그 대신, 문제가 된 적극적 운영 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국가기관이 내릴 수 있는 선택(우선순위와 자원)과 인간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거나 불균형한 부담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했다(§ 165). 사건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작전 계획과 실행에서 실수를 범했으나, 법집행관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180).

## 2. 자해에 대한 인명 보호

27. 재판소는 제2조가 명확히 확립된 특정 상황에서 개인을 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국가기관의 적극적 의무를 내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nolde v. France*, § 81).

28. 특히 구금된 자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Keenan v. the United Kingdom*, § 91). 교정당국 또한 관련자의 권리 및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자해 기회를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치와 예방 조치가 있다(*Renolde v. France*, § 83).

29. 마찬가지로, 개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집병 및 징집병의 생활과 복무 조건에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은 국가 관할기관의 배타적 통제를 받으며, 해당 관할기관에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Beker v. Turkey*, §§ 41-42; *Mosendz v. Ukraine*, § 92; *Boychenko v. Russia*, § 80).

30. 정신장애인은 자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된다(*Renolde v. France*, § 84 and *S.F. v. Switzerland*, § 78).

31. 특히 국가기관은 자발적 입원인지 비자발적 입원인지 관계없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할 일반적인 운영적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입원했는지에 따라 종종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입원한 환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재판소는 사건을 검토할 때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 124).

32.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위협이 구금 중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자살과 같은 자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 의무가 발생하려면, 국가기관이 식별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했을 당시 이러한 위협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는 점과, 만약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위협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Younger v. the United Kingdom* (dec.); *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 110).

33.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의 생명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처했으므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발생했음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재판소는 i) 해당인의 정신 건강 문제의 병력이 있었는지 여부, ii) 정신상태의 심각성, iii) 이전에 자살 또는 자해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iv) 자살 생각 또는 위협, v)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의 징후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 115 및 *Boychenko v. Russia*, § 80).

34. 그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또한 구금된 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의무가 체포되고 억류된 자의 생명을 예측 가능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분명히 포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Eremiášová and Pechová v. the Czech Republic* (수정), § 117; *Keller v. Russia*, § 88).

35. 예방적 운영 조치를 시행할 의무는 지금까지 주로 다음 상황에서 발생했다.

- 구치소 또는 교도소(*Trubnikov v. Russia*; *Akdoğan v. Turkey*; *De Donder and De Clippel v. Belgium*; *Ketreb v. France*; *Volk v. Slovenia*; *Mitić v. Serbia*; *Keller v. Russia*; *S.F. v. Switzerland*)
- 의무병역(*Kılınc and Others v. Turkey*; *Ataman v. Turkey*; *Perevedentsevy v. Russia*; *Malik Babayev v. Azerbaijan*) 또는 직업군인의 군 복무 (*Boychenko v. Russia*)
- 자발적/의무적 정신과 치료(*Reynolds v. the United Kingdom*; *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Hiller v. Austria*)

36. 청구인의 아내가 강제 퇴거에 항의하여 분신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인이 국가 대리인이 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고, 더욱이 이 위협이 국가 대리인의 행동이나 요구로 직접 유발된 감정적 반응인 상황에서, 국가 대리인은 이 위협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지 관계없이, 해당 위협을 해당인의 생명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대리인이 그러한 위협을 사전에 충분히 알게 된 경우,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 위협이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제2조에 따라 적극적 의무가 발생한다(*Mikayil Mammadov v. Azerbaijan*, § 115).

### 3. 환경 또는 산업 재해로부터의 인명 보호

37. 재판소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간주한 산업활동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특히 인간의 생명에 대한 잠재적 위험 수준과 관련하여 문제의 산업활동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된 규제를 특별히 강조했다. 재판소는 해당 산업활동의 허가, 준비, 운영, 보안 및 감독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자들이 내재된 위험에 의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시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실무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8. 이러한 예방 조치 중에서도 협약 기구의 판례법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대중의 알 권리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며, 관련 규정 또한 문제의 활동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의 단점과 각기 다른 수준의 책임자의 잘못을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 90;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 13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 159).

39. 특정 실무적 조치의 선택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수단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협약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채택될 수 있으며,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하나의 특정 조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적극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특히 우선순위와 자원의 관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운영상의 선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기관에 불가능하거나 불균형한 부담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재판소가 과거 판결한 바와 같이, 어려운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 국가가 누리고 있는 광범위한 판단재량에서 비롯된다(*Budayeva and Others v. Russia*, §§ 134-135; *Vilnes and Others v. Norway*, § 220; *Brincat and Others v. Malta*, § 101).



40.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적극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국내법 준수 여부, 적절한 조사와 연구를 포함한 국내 의사결정 과정, 특히 협약상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사건 쟁점의 복잡성 등의 기타 요소를 참작하여 사건의 특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국가에 이행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적극적 의무의 범위는 위협의 근원 및 어느 하나의 위협이 완화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Budayeva and Others v. Russia*, §§ 136-137;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 161).

41. 국가가 위협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조직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모든 경우, 국가는 법 체계 및 합리적인 최소 수준으로 위협을 완화하는 충분한 통제를 통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Mučibabić v. Serbia*, § 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충분한 규제나 불충분한 통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의 적극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불행한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Stoyanovi v. Bulgaria*, § 61).

42. 자세한 내용은 *환경에 관한 판례법 해설서(Case-Law Guide on the Environment)*를 참조한다.

## 4. 의료 관련 상황에서의 인명 보호

### a. 일반 인구

43. 의료 관련 상황에서, 국가는 제2조의 적극적 의무에 따라 민간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Calvelli and Ciglio v. Italy* [GC], § 49; *Vo v. France* [GC], § 89;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166).

44.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규제 의무는 해당 규제체계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할 의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규제 의무에는 감독과 집행을 비롯해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190).

45. 하지만, 국가가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주장된 결함에 대한 추상적 심사가 아니라 구체적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규제체계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약 제2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규제체계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188).

46. 재판소는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라도 관련 규제체계가 환자의 생명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보장하지 못했을 때만 제2조가 실질적으로 위반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18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체약국이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해 높은 전문직 기준을 적용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 경우, 특정 환자의 치료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판단 착오나 보건의료 전문가 간 부주의한 진료 조정과 같은 문제는 생명 보호에 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체약국에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Powell v. the United Kingdom* (dec.); *Dodov v. Bulgaria*, § 82; *Kudra v. Croatia*, § 102;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187).

47. 하지만, 재판소는 공중보건 정책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작위 및 부작위가 특정 상황에서 제2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 체약국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Powell v. the United Kingdom* (dec.)). 또한, 재판소는 체약국 국가기관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여 개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제2조에 따른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Cyprus v. Turkey* [GC], § 219;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 106).

48. 매우 예외적인 두 가지 상황에서, 재판소는 제2조의 실제적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건 의료 제공자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첫 번째 상황은 인명구조 응급처치가 거부되어 환자의 생명이 고의적으로 위태롭게 된 경우이다(*Mehmet Şentürk and Bekir Şentürk v. Turkey*). 두 번째 상황은, 병원 서비스의 체계적 또는 구조적 기능 장애로 인해 환자가 인명구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위험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으며 이러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해당 특정 환자의 생명을 포함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경우이다(*Aydoğdu v. Turkey*).

49. 재판소가 어떤 사건을 인명구조 응급처치 거부 사건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모든 요소가 차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첫째, 보건 의료 제공자의 작위 및 부작위는 해당 보건 의료 제공자가 응급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전문가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 응급치료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 또는 의료과실을 넘어서는 행위여야 한다.
- 둘째, 국가기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제의 기능 장애가 체계적 또는 구조적인 것으로 객관적이고 진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문제의 기능 장애와 지속된 위해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해당 기능 장애는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규제체계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191-196).

50. 재판소는 다음을 포함해 의료과실 및/또는 병원 의료 서비스 거부 문제가 제기된 여러 사건을 검토했다.

-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에게 약물 투여(*Glass v. the United Kingdom* (dec.));
- 기관지폐렴으로 인한 고령 여성의 사망(*Sevim Güngör v. Turkey* (dec.))
-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임산부의 사망(*Z v. Poland*)
- 폐 합병증과 관련하여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례 및 환자의 치료 동의 거부(*Arskaya v. Ukraine*)
- 의료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응급수술을 거부한 임산부의 사망(*Mehmet Şentürk and Bekir Şentürk v. Turkey*)
- 다수의 공공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거절당한 후 구급차에 있던 신생아의 사망(*Asiye Genç v. Turkey*)
- 약물 투여로 인한 심장마비 후 사망(*Altuğ and Others v. Turkey*)
- 국내법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 면허나 자격이 없는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에서 청구인 아들이 사망한 사건(*Sarishvili-Bolkvadze v. Georgia*)

51. 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국가가 특정한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했다. 예를 들어, *Nitecki v. Poland* (dec.); *Pentiacova and Others v. Moldova* (dec.); *Gheorghe v. Romania* (dec.); *Wiater v. Poland* (dec.) 사건을 참조하라.

52. 말기 암 환자들이 미승인 시약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며 청구를 제기한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전통적인 치료법이 불충분해 보이는 상황에서 해당 미승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으며, 협약 제2조가 말기 질환 환자를 위한 미승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8).

## b.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취약계층

53. 재판소는 부과된 조치의 실행 방식과 방법으로 인해 구금에 내재한 불가피한 수준을 초과하는 강도의 고통이나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재소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있는 구금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소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복지 또한 실제 수감 여건의 실무적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Dzieciak v. Poland*, § 91).

54. 재판소는 교도소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이 항상 일반 대중을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기준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구금자의 건강과 복지가 적절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또한 진단과 치료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질병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피구금자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치료 전략을 시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Pitalev v. Russia*, § 54). 그러나, 협약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구금자를 석방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Dzieciak v. Poland*, § 91).

55. 국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복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건강 문제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원인과 사망 전 당사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Slimani v. France*, § 27; *Kats and Others v. Ukraine*, § 104).

56.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받은 치료의 과실을 인정했다.

- 국가기관은 지병이 있는 수형자의 건강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수형자를 적절히 검사하고 치료하지 못했다. 해당 수형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충분히 수술 받지 못했다. 의료진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당장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수형자는 퇴원 조치를 받았다. 의료진은 또한 수형자의 수술과 합병증 발생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 교도소 병원 직원은 해당 수형자를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수술 후 환자로 다루었고, 그 결과 추가 수술이 너무 늦게 수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도소 병원은 대량 출혈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Tarariyeva v. Russia*, §§ 88-89).
- 예정된 수술에 두 차례나 청구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정보가 부족했던 점, 사망 당일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구금기간 자동 연장 결정을 내릴 때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국가기관 간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Dzieciak v. Poland*, § 101).
- 여러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HIV 양성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이송 요청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 신속한 석방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이후 뒤늦게 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중 HIV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Kats and Others v. Ukraine*, §§ 105-112).

- 이차 약물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늦었고 의료진이 해당 질병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제내성 결핵을 앓았던 첫 번째 청구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Makharadze and Sikharulidze v. Georgia*, §§ 90-93).

57. 재판소는 국내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된 취약계층이 이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끔찍한 환경에 처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취약계층의 생명을 불합리한 위험에 빠뜨린 사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취약계층의 치료에 대해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했다(특히, 정신병원에서의 의료적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된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젊은 정신장애자 집시와 관련하여,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 131 및 143-144,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 사회보장기관에서 여러 가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받은 치료에 대해 의료과실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Dumpe v. Latvia* (dec.), §§ 56 및 57 참조).

## 5. 사고 상황에서의 인명 보호

58. 재판소는 국가들이 제2조의 적극적 의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규제체계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Ciechońska v. Poland*, § 69; *Banel v. Lithuania*, § 68).

59. 이 점에 있어, 재판소는 특정 상황에서 공공장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 협약 제2조의 실제적 내용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공공공간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전반적인 법체계와 법령을 채택한 경우, 재판소는 개인의 판단 착오나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직업 종사자 간의 부주의한 조정과 같은 문제가 그 자체로 생명 보호에 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체약국에 책임을 물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Marius Alexandru and Marinela Ștefan v. Romania*, § 100; *Smiljanić v. Croatia*, § 70).

60. 재판소는 또한 인간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 우선순위 및 자원을 고려해야 하는 운영상의 선택을 참작할 때, 적극적 의무를 국가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Ciechońska v. Poland*, § 64; *Marius Alexandru and Marinela Ștefan v. Romania*, § 100).

61. 그 밖에도, 재판소는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협약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채택될 수 있으며,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하나의 특정 조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적극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Ciechońska v. Poland*, § 65; *Marius Alexandru and Marinela Ștefan v. Romania*, § 102).

62. 궁극적으로, 국가가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주장된 결함에 대한 추상적 심사가 아니라 구체적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Marius Alexandru and Marinela Ștefan v. Romania*, § 103 and *Smiljanić v. Croatia*, § 72).

63. 건설 현장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같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성격으로 인해 인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국가는 해당 활동의 특수성에 맞춰 조정된 규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Cevrioğlu v. Turkey*, § 57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특히,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모든 건설 현장, 특히 주거지역의 건설 현장은 인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위험을 비교적 숙지하고 있는 전문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Zinatullin v. Russia*, § 28).



64. 도로 안전에 관한 규제체계 시행에서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첫째로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포함하며, 둘째로는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Smiljanić v. Croatia*, § 69).

65.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피청구국이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 *Kalender v. Turkey*, § 49, 철도 사고로 두 명이 사망한 사건
- *Banel v. Lithuania*, § 69, 청구인의 아들이 밖에서 놀고 있던 중 건물에서 떨어진 발코니 일부에 맞아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사건
- *Cevrioğlu v. Turkey*, § 72, 청구인의 10살 난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덮개로 가려지지 않은 구멍에 빠져 익사한 사건,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승강기에서 추락한 사건인 *Binnur Uzun and Others v. Turkey*, § 49, 참조
- *Smiljanić v. Croatia*, § 85, 음주운전 상습범이 낸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사망한 사건

66. 이와 대조적으로,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피청구국이 생명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Cecilia Pereira Henriques and Others v. Luxembourg* (dec.), 철거 중이던 건물 벽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건설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
- *Furdík v. Slovakia* (dec.), 긴급 산악구조 작업에 관한 사건
- *Molie v. Romania* (dec.), § 47, 학교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관한 사건
- *Cavit Tınarlıoğlu v. Turkey*, § 107,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청구인이 모터보트에 치여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은 사건
- *Marius Alexandru and Marinela Ștefan v. Romania*, § 109, 공공 간선도로를 운전하던 중 청구인들이 타고 가던 차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사건
- *Soares Campos v. Portugal*, § 172, 청구인의 아들이 해변에서 학생들의 신고식 전통과 관련된 모임에 참가하던 중 바다로 휩쓸려간 사건
- *Vardosanidze v. Georgia*, § 61, 청구인의 아들이 가스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스 작동식 온수기를 다시 연결한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 D. 시간적 제한

### 1. 생명의 시작

67. 생명권은 “일반적으로, 수정의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인권*에 관한 *미주국가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4조와 달리, 협약 제2조는 생명권의 시간적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협약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모든 사람”(“*toute personne*”)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는다(*Vo v. France* [GC], § 75).

68. 재판소는 생명의 시작에 대한 과학적, 법적 정의에 대해 유럽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후, 생명권이 언제 시작되는지 문제는 재판소가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이 영역에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단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Vo v. France* [GC], § 82).

69. 의료과실로 인해 청구인이 치료적 낙태 시술을 받아야 했던 *Vo v. France*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갑작스러운 임신 중단이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중보건 영역에서 생명보존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청구국에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85; 또한 유사한 접근법이 채택된 *Mehmet Şentürk and Bekir Şentürk v. Turkey*, § 109 참조).

70.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생성한 배아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이 영국 법령에 따라 승인되었다며 청구가 제기된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영국법에 따라 배아가 독립적인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배아 자신이 또는 타인이 배아를 대신해서 제2조에 따른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문제의 배아가 제2조에서 의미하는 생명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54-56).

## 2. 생의 마감에 관한 문제

### a. 안락사

71. 재판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공권력의 지원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협약 제2조에서 사망할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가 제기된 모든 사건에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Pretty v. the United Kingdom*, § 39).

72. 국가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자살을 돕는 약을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협약 제8조에 따른 적용을 검토할 때 협약 제2조를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협약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생을 마감하기로 한 결정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개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Haas v. Switzerland*, § 54).

### b. 연명치료 중단

73. 생명유지장치에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의 환자가 인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가기관의 결정과 관련된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다수 회원국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원국들 사이에 인공 연명치료 중단 허용에 찬성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치료 중단을 규율하는 제도가 국가마다 적용되는 다르지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생의 마감과 관련된 영역의 경우 국가가 인공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지 여부와 연명치료 중단을 규율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사생활 및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 받을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과 관해서도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재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147-148).

74. 재판소는 치료를 행하는 문제나 치료 중단에 관한 문제를 심사할 때, 제2조의 요건과 양립하는 국내법 유무와 규제체계의 실무 관행, 청구인이 과거 밝힌 소망과 가까운 사람의 소망, 기타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했는지 여부, 환자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83 and *Parfitt v. the United Kingdom* (dec.), § 37).

### III. 고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

#### A. 사형

##### 협약 제2조제1항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HUDOC 키워드

추방 (2) - 범죄인 인도 (2)

생명 (2-1) - 사형 (2-1): 법이 정한 (2-1); 접근가능성 (2-1); 예측가능성 (2-1); 남용에 대한 보호조치 (2-1); 관할 법원 (2-1)

#### 1. 협약 제6의정서와 제13조를 고려한 협약 제2조제1항의 해석

75. 조약 초안 작성 당시에는 사형이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생명권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었으며, 협약 제2조제1항은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들 내에서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전면적인 사형 폐지를 향한 움직임이 일어났다(*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 116).

76. “전시 또는 전쟁의 급박한 위협 시에 발생한 행위”를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협약 제6의정서(*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는 1983년 4월 28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1985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이제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제6의정서에 서명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의정서를 비준했다(*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 116).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제13의정서(*Protocol No. 13*)는 2002년 5월 3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2003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2010년 기준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2개국(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13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서명한 국가 중 3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13의정서를 비준했다(*ibid.*, § 117).<sup>1</sup>

77.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서명 및 비준 현황이 사형집행 유예를 준수하는 일관된 국가 관행과 더불어 제2조가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언급했다(*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 120).

#### 2. 범죄인 인도 및 추방 사건에서의 제2조에 따른 국가 책임

78. 협약 제2조는 사형을 받게 될 실제적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인도하거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한다(*Al Nashiri v. Poland*, § 577; *F.G. v. Sweden* [GC], § 110).

1. 본 해설서의 최신 수정일 현재, 위에 제시된 제6의정서 서명국 및 비준국 수와 제13의정서 서명국 및 비준국 수는 여전히 정확하다. 제13의정서 비준국 수와 관련하여, 모든 서명국 중 오직 한 국가(아르메니아)만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다.

79. 자세한 내용은 *이민에 관한 판례법 해설서(Case-Law Guide on Immigration)*를 참조한다.

## B. 국가 대리인에 의한 치명적 힘의 행사

### 협약 제2조

-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본 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
-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방지
-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 HUDOC 키워드

생명 (2-1) - 힘의 행사 (2-2) - 절대적으로 필요한 (2-2):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보호 (2-2); 합법적 체포 (2-2); 도주방지 (2-2); 폭동 또는 반란 진압 (2-2)

## 1. 증거 평가

80. 자체 절차와 자체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재판소는 청구 적격성뿐만 아니라 재판소에 제시된 각 증거 항목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재량을 행사한다. 재판소는 협약에 따라 또는 국제재판소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판소 절차에는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Carter v. Russia*\*, § 97).

81. 하지만, 재판소는 특정 사건의 상황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 사실심 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McKerr v. the United Kingdom* (dec.)). 일반적으로 국내 절차가 진행된 경우, 국내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인 평가로 대체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며, 제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내법원의 소관이다(여러 판례 중,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 34; *Klaas v. Germany*, § 29 참조). 재판소가 국내법원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제출된 모든 자료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판소가 국내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Avşar v. Turkey*, § 283; *Barbu Anghelescu v. Romania*, § 52 ).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내 조사의 결과로 획득한 증거와 국내 절차에서 확립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국내 조사 절차의 질, 그리고 해당 절차의 철저함과 일관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Carter v. Russia*\*, § 98).

### a. 입증기준

82.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해달라는 청구가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원칙을 확립했다. 사실관계 확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증기준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충분히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치된 추론이나 이와 유사한 반박되지 않은 사실 추정이 공존할 때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증거를 획득할 당시의 당사자들의 행위 또한 고려할 수 있다(*Taniş and Others v. Turkey*, § 160; *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586 및 *Kukhalashvili and Others v. Georgia*, § 148).

## b. 입증책임

83. 특정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설득 수준과 이와 관련된 입증책임의 분배는 사실관계의 특수성, 주장의 성격, 쟁점이 된 협약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586).

84.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피구금자의 사건과 같이, 문제가 된 사건의 모든 상황이나 대부분 상황을 국가기관만이 알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이 구금된 상태에서 일어난 상해 및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에 대한 강력한 추정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입증책임은 국가기관이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Salman v. Turkey* [GC], § 100).

85. 이 원칙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군이나 경찰에 정식으로 소환되어 이들이 관할하는 장소에 간 이후 목격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타당해 보이는 설명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되지 않았으며, 이후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났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Taniş and Others v. Turkey*, § 160).

86. 마찬가지로, 무력 충돌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원칙을 국가기관(정부)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는 해당국의 지역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와 국가 대리인이 관련될 수 있다는 일응의 증거가 있는 경우의 상황에도 적용했다(*Akkum and Others v. Turkey*, § 211; *Aslakhanova and Others v. Russia*, § 97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87. 예를 들어, 러시아 북코카서스(Russian North Caucasus)에서의 실종 혐의에 관한 일련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국가 대리인에 의해 납치되어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일견 증거가 확실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그런 다음에는 정부가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를 공개하거나 해당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해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 자신의 입증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협약 제2조의 실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청구인이 일견 증거가 확실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입증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Estemirova v. Russia*\*, § 63).

88. 실제로, 재판소는 국가기관에 객관적 책임이 있는 이유로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입증할 수 없는 모든 경우, 피청구국이 사건의 순서를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Mansuroğlu v. Turkey*, § 80 및 *Carter v. Russia*\*, § 152). 재판소는 또한 피청구국이 관련 문서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가기관이 중요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아 재판소가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이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추론이 도출될 수 있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 184). 재판소가 국내 조사의 결과로 획득한 증거와 국내 절차에서 확립된 사실관계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는 국내 조사 절차의 질, 그리고 해당 절차의 철저함과 일관성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586 and *Lapshin v. Azerbaijan*, § 95).

89.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일한 혐의와 관련하여 국내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 형법상의 책임은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의 책임과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판소의 권한은 후자에 국한된다. 협약에 따른 책임은 협약의 목적에 기초하고 국제법의 관련 원칙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되는 자체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국가기관, 대리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발생하며, 국내 형사법원에서 심사 중인 개별 형사책임의 국내법 사안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있어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Tanlı v. Turkey*, § 111;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182).



## 2. 국가 대리인에 의한 치명적인 힘의 행사로부터 인명 보호

### a. 법체계

90. 국가 대리인의 힘의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생명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일차적 의무에는 특히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법집행기관이 힘을 행사하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을 규정하는 적절한 법체계와 행정체계를 수립할 의무가 포함된다(*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209; *Makaratzis v. Greece* [GC], §§ 57-59).

91. 제2조에 내재한 엄격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체계는 해당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하며(*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209) 특히 해당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해당인이 제기하는 위협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 96). 또한, 경찰 활동을 규율하는 국내법은 자의성과 무력 남용 및 심지어 방지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수립해야 한다(*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209; *Makaratzis v. Greece* [GC], § 58).

92. 재판소는 “일상적인 경찰 활동”과 대규모 테러 단속 작전 상황을 구분하면서, 흔히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대규모 테러 단속 작전 상황의 경우, 국가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소는 또한 제3자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는 합법적인 치안유지 활동의 경우, 치명적인 힘의 행사는 협약 제2조의 의미에 따른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규정은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불필요한 해를 끼칠 위험을 줄이고 부적절한 결과를 낳는 무기 및 탄약 사용을 금지할 의무를 비롯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한도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595).

### b. 국가 대리인의 훈련 및 자격 검증

93. 재판소는 법집행관들이 관련 규정의 문구는 물론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하여 총기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 97; *Kakoulli v. Turkey*, § 110).

94. 예를 들어,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무력 행사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재판소의 평가는 보안군이 적절한 무기를 갖추었는지(*Güleç v. Turkey*, § 71; *Şimşek and Others v. Turkey*, § 117), 인권 및 치안유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훈련을 받았는지, 총기 사용 방법과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지시를 받았는지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ibid.*, § 109). 특히, 재판소는 가능한 상황에서는 항상 먼저 경고사격을 한 후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177).

95. 또한, 국가는 높은 전문성 기준을 포함하는 법집행 체계를 수립하고 법 집행관들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 총기를 지급할 때는 경찰관들이 필수적인 전문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찰관도 특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Sašo Gorgie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51).

### c. 실제 사례

96.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재판소는 예컨대 불가리아에서 경찰이 구두 경고와 공중에 경고 사격을 한 후 즉시 투항하지 않은 탈주병에 발포하도록 허용하는 법체계가 충분히 수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 99-102).

97.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1934년에 채택된 법체계가 경찰관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열거한 터키 법체계가 미흡했다고 확인했다(*Erdoğan and Others v. Turkey*, §§ 77-79). 반면, 재판소는 또다른 사건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명시한 규정이 협약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은 총기 사용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여겨져야 하며, 다리에 발포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기 전 경고사격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Bakan v. Turkey*, § 51).

98.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청구인이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혼란스러운 경찰 추격전과 관련된 *Makaratzis v. Greece*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리스 국내법이 평시의 무력 사용에 적용되는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법 집행관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재판소는 또한 적절한 훈련과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청구인을 끝까지 추격하여 체포한 경찰관들이 행동 면에서 더 큰 자율성을 누렸으며, 지침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70).

99. 재판소는 비번인 경찰관이 말다툼 끝에 경찰에서 지급받은 총기로 청구인들의 친척 여러 명을 살해한 *Gorovenky and Bugara v. Ukraine*, § 39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경찰관에 총기를 지급하기 전에 해당 경찰관을 적절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Sašo Gorgie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52를 참조하라.

### 3. 힘의 행사에 대한 허용된 예외

100. 제2조에 열거된 예외는 제2항이 고의적 살인에 적용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2조 본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제2항의 주된 목적이 생명을 박탈하도록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이 박탈될 수 있는 “힘의 행사”가 허용되는 상황을 기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힘의 행사는 제(a)호, 제(b)호 또는 (c)호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48; *Yüksel Erdoğan and Others v. Turkey*, § 86; *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 286;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17).

#### a. 적용될 심사기준

101. 원칙적으로, 제2조제2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국가의 조치가 협약 제8조제2항에서 제11조에 따라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심사보다 더 엄격하고 설득력 있는 필요성 심사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힘의 행사는 제2항의 제(a)호, 제(b)호 또는 (c)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엄격히 비례해야 한다(*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49).

102.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소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현대 국가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사후 분석의 위험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 성격상 적절한 감독을 받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 선택과, 보호 대상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행위의 기타 운영 측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제2조에 규정된 절대적 필요성 심사는 국가기관이 이 민감한 영역에서 운영적 의사결정에 내재한 상황과 기타 관련 제약 조건을 통제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통제했는가에 따라 다른 수준의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481).



103. 재판소는 인질 구출 작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룬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구출 작전의 계획과 수행에는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재판소는 (i) 작전이 자발적이었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해당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 (ii) 국가기관이 해당 특정 위기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준비된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iii) 대부분 구출 작전이 수행되는 건물 외부에서의 상황통제 수준이 높을 것, (iv) 예측가능성이 높은 위험일수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크다는 점 등의 요소를 고려했다(*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563).

## b. 일반 접근법

104. 민주사회에서 이 조항이 가진 중요성에 따라, 재판소는 생명 박탈 사건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때, 특히 치명적인 힘이 고의로 행사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해당 치명적인 힘을 행사한 국가 대리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계획 및 통제와 같은 사안을 포함한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50; *Ergi v. Turkey*, § 79).

105. 추구된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Güleç v. Turkey*, § 71).

106. 예를 들어, 재판소는 합법적인 체포를 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체포 대상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치명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을 체포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 95; *Kakoulli v. Turkey*, § 108).

107. 마찬가지로, 국경통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체약국이 원칙적으로 무단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경통제 필요성은 협약 또는 그 의정서와 양립할 수 없는 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Bişar Ayhan v. Turkey*, § 65).

## i. 국가 대리인의 행동

108. 국가 대리인이 협약 제2조제2항에 열거된 목적 중 하나를 추구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고 이를 행사할 당시에는 진실한 믿음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실수였음이 판명된 경우 이러한 힘의 행사는 협약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와 국가의 법 집행관에게 의무 이행에 있어 비현실적인 부담을 가하게 될 것이며, 법 집행관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200; *Andronicou and Constantinou v. Cyprus*, § 192; *Bubbins v. the United Kingdom*, § 138; *Huohvanainen v. Finland*, § 96).

109. 재판소는 또한 문제의 사건과는 별개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이 정말로 위협에 처했다고 인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대응해야 했던 법 집행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판단한 사항을 재판소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Bubbins v. the United Kingdom*, § 139; *Huohvanainen v. Finland*, § 97).

110. 국가 대리인의 행동을 심사할 때, 주된 문제는 해당 대리인이 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었는지 여부이다. 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사할 때는 관련 시점의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러한 믿음이 해당 대리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해당 대리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즉, 주관적인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해당 믿음이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절차적 의무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된 사건이긴 하나 *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48, 참조).

## ii. 작전 계획 및 통제

111. 따라서 문제의 치명적인 힘이 제2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는지 결정할 때, 법집행 작전이 치명적인 힘의 행사나 우발적인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계획되고 통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Bubbins v. the United Kingdom*, § 136; *Huohvanainen v. Finland*, § 94).

112. 재판소는 협약 제2조의 관점에서 작전 계획 및 통제 단계를 심사할 때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해당 상황이 전개된 상황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한다(*Andronicou and Constantinou v. Cyprus*, §182; *Yüksel Erdoğan and Others v. Turkey*, § 86).

113. 이러한 사건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국가 기관이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작전 계획과 통제를 실행함에 있어 생명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행동을 선택하는 데 부주의하지 않았는지 심사하는 것이어야 한다(*Bubbins v. the United Kingdom*, § 141).

## iii. 실제 사례

114. 재판소는 다음 사건의 무력 행사가 협약 제2조제2항에 열거된 목표 중 하나를 추구함에 있어 엄격히 비례적이었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Güleç v. Turkey*, § 71, 청구인의 아들이 시위 도중 경찰봉, 방패, 물대포, 고무탄, 최루탄 등을 갖추지 않은 보안군이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기관총을 발포하여 사망한 사건. 또한 시위대 해산 중 경찰관 총에서 발사된 유탄에 미성년자가 중상을 당한 사건인 *Evrin Öktem v. Turkey* 참조
- *Kakoulli v. Turkey*, § 121, 북키프로스 남키프로스 사이의 완충지대에 비무장 상태로 들어간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이 터키군에게 사살된 사건
- *Wasilewska and Kałucka v. Poland*, § 57, 용의자가 경찰 작전 중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 *Trévalec v. Belgium*, § 87, 기자가 경찰 작전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허가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경찰특공대의 총에 맞은 사건
-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 109, 비무장 상태로 도주하던 집시 2명이 체포 시도 중 헌병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 *Tagayeva and Others v. Russia*, § 611, 북오세티야 베슬란의 한 학교에서 테러범들이 대규모 인질극을 벌인 상황에서 구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다수의 인질이 살해된 사건, 이와 대조적으로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테러범들이 인질극을 벌인 상황에서 구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다수의 인질이 살해된 사건인 *Finogenov and Others v. Russia*, §§ 226 및 236 참조
- *Kukhalashvili and Others v. Georgia*, §157,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사건

- *Yukhymovych v. Ukraine*, § 86, 청구인의 아들이 갈취 혐의에 대한 범죄수사 상황에서 수행된 경찰 작전 중 살해된 사건

115.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다음 사건의 무력 행사가 협약 제2조제2항에 열거된 목표 중 하나를 추구함에 있어 엄격히 비례했다고 판결했다.

- *Bubbins v. the United Kingdom*, § 141, 청구인의 형제가 2시간 동안 포위된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총에 피격된 사건, 또한 *Huohvanainen v. Finland*, § 107 참조
-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194, G8 정상회의에서 경찰 병력이 시위대에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사건
- *Perk and Others v. Turkey*, § 73, 경찰이 급진적인 무장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대응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친척이 사망한 (또한 경찰과의 무장 충돌 과정에서 청구인의 친척들이 살해된 것과 관련된 *Yüksel Erdoğan and Others v. Turkey*, § 100 참조)
- *Mendy v. France* (dec.), §§ 31-33, 칼을 들고 한 남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정신장애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 C. 특별한 상황

### 협약 제2조

-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본 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
-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방지
-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 HUDOC 키워드

- 적극적 의무적극적 의무 (2) – 생명 (2-1)
- 힘의 행사 (2-2) – 절대적으로 필요한 (2-2);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보호 (2-2); 합법적 체포 (2-2); 도주방지 (2-2); 폭동 또는 반란 진압 (2-2)

## 1. 특정한 체포술 사용으로 인한 사망

116. 재판소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 않은 특정한 체포술을 사용한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 많은 사건에서, 힘의 행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 대리인이 사망자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생명권을 보호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Scavuzzo-Hager and Others v. Switzerland*, § 55, 매우 흥분한 상태의 마약 중독자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사망한 사건; *Saoud v. France*, 경찰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30분 이상 땅에 엎드려 있다가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 *Boukrourou and Others v. France*, 청구인들의 친척인 정신장애인이 경찰 작전 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및 *Semache v. France*, 고령의 음주 운전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가 무릎에 닿은 채 묶인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양 옆에서 대상을 겨냥한 채 체포하는 방법”).

## 2. 구금 중 사망

117. 구금된 사람들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강한 상태로 경찰에 구금된 사람이 이후 상해를 입고 석방될 경우, 국가는 해당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해 타당해 보이는 설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이 구금된 사람의 처우에 대해 해명할 의무는 해당인이 사망한 경우 특히 엄격히 적용된다 (*Salman v. Turkey* [GC], § 99; *Tanlı v. Turkey*, § 141; *Tekin and Arslan v. Belgium*, § 83).

118.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청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피청구국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Anguelova v. Bulgaria*, § 121, 청구인의 친척이 구금된 지 2시간 후 두개골에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건
- *Kişmir v. Turkey*, § 105, 청구인의 아들이 폐부종과 관련된 호흡 부전으로 Diyarbakir 경찰 본부에서 사망한 사건
- *Aktaş v. Turkey*, § 294, 청구인의 친척이 구금 중에 지속된 기계적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
- *Mojsiejew v. Poland*, § 65, 청구인의 아들이 주취자 보호소에서 사망한 사건
- *Khayrullina v. Russia*, §§ 84-85, 청구인의 남편이 경찰 구금 중에 입은 상처로 사망한 사건

## 3. 초법적 살인

119. 그 밖에도, 청구인의 친척이 제2조제2항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여러 청구가 재판소에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사건 기록의 증거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친척이 국가 대리인에 의해, 또는 국가 대리인의 묵인이나 방조 하에 살해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재판소는 피청구국 정부가 이러한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것이다(*Avşar v. Turkey*, §§ 413-416; *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 § 147; *Estamirov and Others v. Russia*, § 114; *Musayeva and Others v. Russia*, § 155; *Amuyeva and Others v. Russia*, §§ 83-84;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이 그의 생명을 노린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건인 *Lapshin v. Azerbaijan*, § 119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Denizci and Others v. Cyprus*, § 373; *Buldan v. Turkey*, § 81; *Nuray Şen v. Turkey (no. 2)*, § 173; *Seyhan v. Turkey*, § 82 및 *Carter v. Russia\**, §§ 170-172 참조).

120. 그러나, 재판소가 국가 대리인이 살인에 관여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청구국의 국가기관이 청구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소는 피청구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것이다(*Mahmut Kaya v. Turkey*, §§ 87 및 101; *Kılıç v. Turkey*, §§ 64 및 77; *Gongadze v. Ukraine*, §§ 170-171; 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Denizci and Others v. Cyprus*, §§ 374 및 377).

## 4. 치안유지 또는 군사 작전

121. 치안유지 작전과 관련된 특정 맥락에서, 재판소는 국가의 책임이 국가 대리인의 잘못된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한 민간인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어떤 경우이든 우발적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대 집단에 대해 수행된 치안유지 작전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실행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약 위반 판결을 내릴 수 있다(*Ahmet Özkan and Others v. Turkey*, § 297).

122.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판결한 사례가 있다.

- 군이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Ergi v. Turkey*, § 81, 경찰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상대로 수행한 매복 작전에서 청구인의 여자 형제가 사망한 사건).
- 마을에서 총탄이 날아오자 경찰이 생명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포격을 가한 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키는 제2조에 따른 생명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Ahmet Özkan and Others v. Turkey*, §§ 306-308, 아동 2명의 사망을 유발한 테러범을 체포하기 위해 마을에서 수행된 군대의 급습과 관련된 사건).
-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적절히 수립되지 않은 채 군사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Isayeva and Others v. Russia*, § 199, 체첸 전쟁 중 러시아군 제트기 군용기의 수송대 폭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 또한 재판소가 민간인 및 민간 마을에 대한 무차별 공중폭격은 민주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으며, 협약 제2조제2항에 명시된 무력 행사의 근거, 국제인도법의 관습 규칙 또는 무력 충돌에서의 무력 사용을 규율하는 어떠한 국제조약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판결한 *Abuyeva and Others v. Russia*, § 203 및 *Benzer and Others v. Turkey*, § 184 사건을 참조하라.
- 청구인의 아내가 포탄에 맞아 사망한 *Şirin Yılmaz v. Turkey*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아내가 경찰에 의해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76; 또한 *Zengin v. Turkey*, § 44 참조).
- 이와 대조적으로, 재판소는 출입이 금지된 군사지역을 불법으로 넘던 중 이란 국경 근처에서 이란군의 박격포를 발사하여 첫 번째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청구인의 친척이 사망한 사건에서 박격포 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과도한 힘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Bişar Ayhan v. Turkey*, § 74).

123. 재판소는 또한 제2조가 무력 충돌의 야만성과 비인간성을 줄이는 데 필수불가결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인도법 규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가능한 한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국은 국제 분쟁 지역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전투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항복한 경우, 책임 규명의 필요성에 따라 사망자의 유해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요구되며, 국가기관은 관련자의 신원과 생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기구가 그렇게 하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 185). 따라서, 비록 국제인도법의 조항에 기초한 해석이긴 하지만, 국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협약에 따른 보호조치가 계속 적용된다(*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 104).

## 5. 실종

### a. 사망 추정

124. 건강한 상태로 경찰에 구금된 사람이 이후 상해를 입고 석방될 경우, 국가는 해당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해 타당해 보이는 설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협약 제3조에 따른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5조는 구금된 모든 사람의 소재와 구금되어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의 소재를 설명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 국가기관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피구금자의 생사에 관해 타당해 보이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제2조에 따른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요소에 기초하여 검토한 사건의 모든 정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특히 충분한 정황증거가 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요소에 기초하여 사건의 모든 정황을 검토한 후 필수 입증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는 피구금자가 구금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Timurtaş v. Turkey*, § 82).

125. 이 점에 있어, 구금된 후 지난 기간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이다. 피구금자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은 채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피구금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를 관련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전에 정황증거의 다른 요소에 부여되는 중요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재판소는 이 상황이 제5조를 위반하는 단순한 불법적 구금 이상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의 하나인 제2조가 제공하는 생명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에 부합한다(*Taniş and Others v. Turkey*, § 201).

126. 그러나 이러한 사망 추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인이 살아 있는 채로 목격되거나 살아 있다는 소식이 전달된 이후 경과한 시간을 관련 요소로 고려하여 사건의 상황을 검토한 이후에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 143; *Aslakhanova and Others v. Russia*, § 100).

127. 그 밖에도, 한 사람의 실종에 국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해당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실종된 것 자체를 해당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Medova v. Russia*, § 90).

128. 예를 들어, 체첸분쟁과 관련된 상황에서, 재판소는 신원 미상의 군인들이 어떤 사람을 구금한 후 해당인이 구금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Baysayeva v. Russia*, § 119; *Beksultanova v. Russia*, § 83).

129.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 터키 남동부에서 한 사람이 실종된 상황을 해당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Osmanoğlu v. Turkey*, §§ 57-58; *Meryem Çelik and Others v. Turkey*, § 58), 재판소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실종된 사례가 특히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Enzile Özdemir v. Turkey*, § 45).

## b. 추정된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

130. 재판소가 판단할 때, 국가 대리인들이 실종자를 구금한 후 해당인의 구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종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 이 상황은 협약 제2조제2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재판소는 실종자의 추정된 사망에 대한 책임이 피청구국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Akdeniz and Others v. Turkey*, § 101; *Orhan v. Turkey*, § 331; *İpek v. Turkey*, § 168; *Bazorkina v. Russia*, § 111; *Magomadov v. Russia*, § 99; *Meryem Çelik and Others v. Turkey*, § 60; *Mikiyeva and Others v. Russia*, § 160; *Kushtova and Others v. Russia (no. 2)*, § 83; and by contrast *Tahsin Acar v. Turkey* [GC], §§ 217-219; *Nesibe Haran v. Turkey*, § 68; *Shafiyeva v. Russia*, § 79; *Kagirov v. Russia*, § 97).

## c.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131. 한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람이 실종된 경우, 국가는 협약 제2조에 내재한 적극적 의무에 따라 실종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Koku v. Turkey*, § 132; *Osmanoğlu v. Turkey*, § 75).

132. 이와 관련하여, 국가 대리인이 법적 의무를 벗어난 행동을 하여 식별된 개인의 생명에 대해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을 가했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입증된 경우, 생명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무가 위반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Gongadze v. Ukraine*, § 170; *Turluyeva v. Russia*, §§ 100-101).

## 6. 국가 대리인이 개인 자격으로 저지른 살인

133. 체약국은 국가 대리인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초래한 인권 침해에 대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Krastanov v. Bulgaria*, § 53). 협약 목적상 어떤 사람이 국가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기준에 따라 확정되며, 그중 하나는 해당인이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기준이다(*Fergec v. Croatia*, § 36). 재판소는 또한 국가 대리인의 행위가 불법 행위인 경우, 문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인 상황과 해당 행위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Sašo Gorgie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47-48).

134. 특히, 재판소는 국가 대리인이 개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힐 경우, 해당 국가 대리인이 문제의 불법행위를 범할 때 적어도 국가기관의 목인이나 방조 하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사건 당시 해당 국가 대리인이 근무 중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Enukidze and Girgvliani v. Georgia*, § 290; *Kotelnikov v. Russia*, § 93; *Fergec v. Croatia*, § 36).

135.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가는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예를 들어, 재판소가 채택한 접근법과 관련하여 *Gorovenky and Bugara v. Ukraine*, §§ 31-40 참조).

136. 아제르바이잔의 한 장교가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북대서양협약기구(NATO) 강자에 참가하던 중 아르메니아 장교를 살해하고 또 다른 아르메니아 군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최근 사건에서,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이 문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점에 있어, 재판소는 가해자가 공무집행이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결정적 중요성을 부여했다. 재판소는 또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유엔 초안 조항 제11조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분명히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승인”과 “찬성”을 나타냈으나, 아제르바이잔이 가해자의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명백하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한 희생자의 살인에 대한 책임과 다른 희생자의 살인 미수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떠맡았다는 점은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 않았다(*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 111-118).

137.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에서 높은 수준의 플로늄 210 중독을 통해 자행된 러시아 반정부 인사인 정치 망명자에 대한 표적 살인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개입에 관한 일응의 증거가 제시되었고 피청구국이 이를 반박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영국에서 국내 조사 결과 가해자로 확인된 두 명의 러시아인이 국가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청구가 제기된 행위의 책임이 러시아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Carter v. Russia\**, §§ 162-169).

## IV. 절차적 의무

### 협약 제2조제1항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 HUDOC 키워드

효과적인 조사 (2-1)

### A. 절차적 의무의 범위

138. 국가의 절차적 의무는 국가 대리인이 치명적인 힘을 행사한 맥락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설명되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가 대리인에 의한 자의적 살인이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만약 국가기관이 치명적인 힘의 행사에 대한 합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법적 금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약 제1조에 따른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와 연계하여 해석할 때, 국가 대리인 등이 힘을 행사한 결과로 사람이 살해된 경우 이 조항의 생명권 보호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효과적인 공식 조사를 수행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61).

139. 이후 재판소는 해당 가해자가 국가 대리인이든 사인(私人)이든 신원 미상의 자이든 아니면 자해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개인이 생명을 위협받는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거나, 폭력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실종된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의 절차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예를 들어, 재소자 간 폭력에 관한 사건: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 69; 조기 석방 또는 사회 재통합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전과자가 저지른 살인에 관한 사건: *Maiorano and Others v. Italy*, §§ 123-26; 저명인사의 암살에 관한 사건: *Kolevi v. Bulgaria*, §§ 191-215; 가정폭력에 관한 사건: *Opuz v. Turkey*, §§ 150-150; 의문사 또는 실종에 관한 사건: *Iorga v. Moldova*, § 26; *Tahsin Acar v. Turkey* [GC], § 226; 자살에 관한 사건: *Trubnikov v. Russia*; *Mosendz v. Ukraine*, § 92; *Vasîlca v. the Republic of Moldova*, § 28 참조).

이 의무는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법 조항을 시행하고 범죄 방지, 억제 및 형법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을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제2조에서 발생한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국가 대리인이 아닐지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의무는 효과적인 공식 조사를 수행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 171).

140. 재판소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었거나 과실에 의한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은 경우에까지 이 의무의 범위를 확대했다(예를 들어, 의료 관련 상황을 다룬 사건: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14;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건: *Anna Todorova v. Bulgaria*, § 72 참조).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귀책 당사자에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Sinim v. Turkey*, § 59; *Ciechońska v. Poland*, § 66).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조사 의무에 관한 일반 원칙, 특히 최소 요구 기준<sup>2</sup>을 일부 단편적으로 조정하여 변경했다.

141. 공무수행 중인 국가 대리인이 치명적인 공격의 피해자인 경우, 재판소는 국가의 절차적 의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과실이나 부작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ibcheva and Others v. Bulgaria*, §§ 125-130).

## B.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사이의 관계

142.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할 국가의 의무는 재판소의 판례법에서 생명권이 "법에 의하여 보호"될 것 등을 요구하는 제2조에 내재한 의무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2조의 절차적 의무는 별개의 의무로 간주된다(*Ilhan v. Turkey* [GC], §§ 91-92; *Šilih v. Slovenia* [GC], §§ 153-154). 이는 별도의 독립적인 "침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결론은 재판소가 실체적 의무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절차적 의무에 대한 문제를 일관되게 검토했다는 사실(적절한 경우, 이런 이유로 제2조에 대한 별도의 위반 사실이 확인됨)과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에 대한 위반 주장이 실체적 측면에 대한 청구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에서 도출된다(*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31).

## C. 조사의 목적

143. 제2조에 따른 조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생명권을 보호하는 국내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국가 대리인 또는 국가기관이 연루된 사건에서 국가 대리인 또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망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 105;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 110;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63).

## D. 조사의 형태

144.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조사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조사 방식을 채택하든,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기관은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제소하게 하거나 조사절차 수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65).

145. 국가 대리인이 저질렀거나 국가 대리인과 결탁하여 저질러졌다는 혐의가 제기된 살인 사건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 주도로 진행되며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 민사절차는 국가가 협약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 141). 이러한 경우, 단지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협약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McKerr v. the United Kingdom* (dec.), § 121; *Bazorkina v. Russia*, § 117;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65).

146. 재판소는 살인 사건의 경우 협약 제2조가 공식 조사를 수행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살인죄 혐의가 단지 형사책임만을 제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 대리인이 저질렀거나 국가 대리인과 결탁하여 저질러졌다는 혐의가 제기된 살인 사건에서는 흔히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만이 실제 사망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형사소추, 징계 절차,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같은 적절한 국내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Makaratzis v. Greece* [GC], § 73; *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 §§ 120-121).

2.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과 관련하여 "절차적 의무" 절 참조.

## E. 조사의 성격과 정도

147.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조사의 성격과 정도는 특정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각 사건은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업무의 실제 현실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 147).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단순한 조사 점검표나 기타 간단한 기준으로 축소할 수 없다(*Velikova v. Bulgaria*, § 80).

148. 의문사 사건이 국가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관련 국내기관은 후속 조사를 특히 엄중하게 수행해야 한다(*Enukidze and Girgvliani v. Georgia*, § 277; *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34).

149. 실종 관련 상황의 경우, 실종이 다른 상황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현상이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고의로 은폐되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절히 해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흔히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종자의 행방과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추가적인 특징 때문에 피해자의 친척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는 한 절차적 의무가 계속 적용될 것이며, 필요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속적인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 148).

150. 청부살인의 경우, 재판소는 청부살인 교사자, 즉 암살을 지시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조사 활동이 수행되지 않는 한 충분한 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부살인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면밀한 조사는 단순히 청부살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Mazepa and Others v. Russia*, §§ 75-79).

151.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언론인인 경우, 재판소는 언론 보호와 언론인 및 기타 행위자의 안전에 관한 권고 CM/Rec(2016) 4를 참고하여 언론인의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Mazepa and Others v. Russia*, § 73).

## F. 조사 기준

### 1. 독립성

152. 국가 대리인의 불법적인 살인 혐의에 대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일반적으로 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위계적 또는 제도적 관계가 없어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아닌 국가가 힘의 행사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이다(*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32).

153.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는 추상적인 평가가 아닌 조사 전체의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 222).

154. 그뿐만 아니라, 제2조는 조사 책임자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절대적인 독립성을 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개인적 간섭과 구조적 간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일 것을 요구한다. 독립성 수준의 충분성은 각 사건마다 필연적으로 고유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ibid.*, § 223).

155. 하지만, 법적 또는 제도적 독립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지는 않을지라도, 재판소는 조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 올바른 접근법은 문제의 상황이 사망 상황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가능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약화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약화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ibid.*, § 224).

156.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검찰이 경찰의 정보와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가 특정 경찰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 344).

157. 재판소는 조사관이 예컨대 다음에 해당했던 사건에서 조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 잠재적 피의자(*Bektaş and Özalp v. Turkey*, § 66; *Orhan v. Turkey*, § 342)
- 조사 대상자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동료(*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 335-341; *Emars v. Latvia*, §§ 85 및 95)
- 잠재적 피의자와 위계 관계에 있는 조사관(*Şandru and Others v. Romania*, § 74; *Enukidze and Girgvliani v. Georgia*, §§ 247 이하)

158.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일부 사건에서 조사기관의 특정 작위나 부작위가 독립성 결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사건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조치를 수행하지 않음(*Sergey Shevchenko v. Ukraine*, §§ 72-73)
- 피의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부여함(*Kaya v. Turkey*, § 89)
- 일부 명백하고 필수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음(*Oğur v. Turkey* [GC], §§ 90-91)
- 타성에 젖은 관행(*Rupa v. Romania (no. 1)*, §§ 123-124)

159. 재판소는 다음 상황에서 조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조사관과 조사 대상자가 해외에서 수행된 특정 군사작전 상황에서 단순히 같은 숙소를 썼다는 사실(*Jaloud v. the Netherlands* [GC], § 189)
- 조사를 수행한 군사법원이 완전한 법적 독립성을 갖지 못했으나 주요 잠재적 피의자와 직접적인 위계적, 제도적 관계 또는 기타 다른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해당 군사법원의 특정 조치에서 조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가 확인되지 않음(*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 254)

## 2. 충분성

160. “효과적인”이라는 표현은 협약 제2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약국에 책임이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충분해야 한다(*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 324). 이는 조사 결과 해당 상황에서 힘의 행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경우 책임자를 식별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43 이 의무는 결과의 의무가 아니라 수단의 의무이다(*Tahsin Acar v. Turkey* [GC], § 223; *Jaloud v. the Netherlands* [GC], § 186).

161. 조사기관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목격자 증언, 법의학 증거 및 적절한 경우, 완전하고 정확한 부상 기록과 사망 원인을 포함한 임상 소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부검이 포함된다(*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33).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고인의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고인의 시신을 발굴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Solska and Rybicka v. Poland*, §§ 120-121). 또한, 국가 대리인이 힘을 행사한 사건에서는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조사 수행 결과 국가 대리인에 의한 힘의 행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33). 사망 원인 또는 책임자를 규명할 능력을 약화하는 조사의 결함은 이 기준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66).

162. 특히, 조사에 대한 결론은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려져야 한다. 조사 선상에 오른 명백한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정황과 책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능력이 결정적으로 약해진다(*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 175).

163. 재판소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려고 시도하던 중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사건에서 총격을 가한 경찰관들의 손에서 총기발사 잔여물을 검사하지 않은 점, 사건 재구성 단계 수행, 무기나 탄약 검사, 충분한 시각적 외상 기록 결여, 신문을 수행하기에 앞서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분리하지 않은 점 등의 흠결로 인해 조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사건(*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 326-332)
- 법의학 조사에 흠결이 있었던 사건(*Tanlı v. Turkey*, § 153)
- 조사기관이 추가 목격자 진술을 받지 않은 채 피의자인 국가 대리인들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건(*Özalp and Others v. Turkey*, § 45) 또는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부분 기초하여 결정을 내린 사건(*İkincisoğlu v. Turkey*, § 78)
- 군용기로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한 책임자의 신원 확인과 기소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비행 기록부를 조사하지 않은 사건(*Benzer and Others v. Turkey*, § 196)
- 탐사보도 기자에 대한 청부살인 사건에서 다른 혐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 하나의 혐의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사건

164. 반면,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국내기관이 취한 다양한 조치들을 고려한 후, 조사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 209, 청구인의 아들과 남자 형제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건
- *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86, 테러 용의자로 오인되어 치명적인 총격을 받은 사고의 조사에 관한 사건

-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309, G8 정상회의에서 경찰 병력이 시위대에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사건
- *Pal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64-6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전쟁 중에 실종된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건

### 3. 즉각성과 합리적인 신속성

165. 제2조는 조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고(*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37)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305).

166. 재판소는 특정 상황에서 조사의 진전을 방해하는 장애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치명적인 힘의 행사를 조사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본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67; *Tahsin Acar v. Turkey* [GC], § 224; *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37).

167. 재판소는 시간의 경과가 조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완료할 기회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 337).

168. 재판소는 예컨대 다음 사건에서 국내기관이 충분히 즉각적인 조사와 합리적으로 신속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Kell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136: 청구인의 친척이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의 사인규명 절차가 사망 후 8년이 지나서야 시작된 사건
- *Nafiye Çetin and Others v. Turkey*, § 42: 청구인의 친척의 경찰에 의해 구금된 후 사망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처벌하기 위해 시작된 형사절차가 거의 15년 동안 미결 상태였던 사건
-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 348: 1990년 루마니아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모카누(Mocanu)가 살해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전반적으로 23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였던 사건
- *Hemsworth v. the United Kingdom*, § 74: 북아일랜드 보안군이 청구인들의 친척을 납치하여 살해한 지 13년 만에 사인규명 심리가 시작된 사건
- *Jelić v. Croatia*, § 91: 1991년 청구인의 남편이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적절한 해명 없이 지연되었던 사건
- *Mazepa and Others v. Russia*, § 81: 탐사보도 기자에 대한 청부살인 사건에서 특히 범죄를 실행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11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였던 사건

169. 그러나 재판소는 헤즈볼라(Hizbullah)가 자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살인 사건에서 조사 기간 및/또는 그에 따른 형사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범죄의 성격,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의한 살인,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주목한 후, 재판소는 이들 사건에서 비록 조사가 오랫동안 수행되긴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기관이 청구인의 친척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Bayrak and Others v. Turkey*, §§ 54-55; *Adıyaman v. Turkey* (dec.)). 또한, 무력 충돌 중 발생한 사망 및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Pal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70; *Zdjelar and Others v. Croatia*, §§ 91-94를 참조한다.



#### 4. 공공 감시와 가까운 친척의 조사 참여

170. 실제와 이론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나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공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조사에 따라 진행된 모든 절차의 모든 단계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경찰 보고서와 조사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사인(私人)이나 다른 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을 협약 제2조에 따라 자동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요구되는 공공 감시 수준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 353;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304).

171. 그러나 모든 경우에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절차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67). 이는 조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척이 요구하는 특정 조사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 348;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304). 그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 대해 공공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절차의 다른 단계에서 대중이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 121).

172.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가까운 친척이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조사에 대해 충분한 공공 감시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가족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법원 서류를 열람할 수 없었던 사건(*Oğur v. Turkey* [GC], § 92) 또는 조사의 진전 상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사건(*Betayev and Betayeva v. Russia*, § 88;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 지위를 받지 못했으며 어떠한 조사 단계에 대해서도 통지받지 못했던 *Boychenko v. Russia*, § 99 참조)
- 피해자의 부인이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사건 기록을 적절히 검토할 수 없었으며 목격자 진술이나 절차적 조치에 관한 기록도 전달받지 못했던 사건(*Mezhiyeva v. Russia*, § 75)
- 피해자의 아버지가 불기소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사건(*Güleç v. Turkey*, § 82)
- 친척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고발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사건(*Slimani v. France*, § 47)
- 청구인이 조사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보류한 사건(*Benzer and Others v. Turkey*, § 193)
- 고인의 아버지가 형사사건 기록이나 행정조사 서류를 열람할 수 없었고, 고인의 시신에 대해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음에도 부검을 마친 뒤에야 고인의 사망 사실을 통지받은 사건(*Fountas v. Greece*, § 96)
- 경찰작전 중 위험인물에 의해 사망한 경찰관의 사망 사고에 대해 2건의 내부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사망한 경찰관의 친척인 청구인이 이러한 내부 조사 기록을 전혀 열람할 수 없었고 해당 조사에도 참여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영향을 받았던 사건(*Ribcheva and Others v. Bulgaria*, §§ 146-147)

173.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가까운 친척의 조사 참여나 공공 감시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315, G8 정상회의에서 경찰 병력이 시위대에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사건

- *Bubbins v. the United Kingdom*, § 161, 청구인의 형제가 2시간 동안 포위된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총에 피격된 사건
- *Palić v. Bosnia and Herzegovina*, § 6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전쟁 중에 실종된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건
- *Waresiak v. Poland*, § 95,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적용되는 제한과 관련된 사건

## G. 기소, 제재, 배상 관련 문제

174.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실제로 특정 형에 대한 선고를 받도록 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조사가 구체적인 결과 없이 종료되거나 조사 결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 306). 지금까지, 재판소는 다른 모든 측면에서 제2조를 준수하여 조사를 수행한 후 내린 검찰의 결정에 대해 협약 위반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충분한 검토를 수행한 관할 국내법원이 기존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절한 형법을 적용한 결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법원에 기소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Hanan v. Germany* [GC], § 210).

175. 그러나 절차적 측면에서 제2조의 요건은 공식 조사 단계를 넘어 적용된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법원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실심 단계를 포함한 해당 전체 절차가 법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 의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Öneriyildiz v. Turkey* [GC], § 95; *Ali and Ayşe Duran v. Turkey*, § 61).

176.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보통 독립적이고 공평한 판사에 의해 당사자주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재판이 사실관계 확정과 형사책임 귀속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한다(*McKerr v. the United Kingdom* (dec.), § 134). 그렇지만, 예컨대 조사 과정에서의 흠결로 인해 법원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Ağdaş v. Turkey*, § 102).

177. 재판소는 국가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대우와 살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국내법원이 내린 결정을 상당히 존중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자행된 범죄와 부과된 제재가 명백히 불균형한 사건에서 일정한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개입해야 한다(*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 285).

178. 예를 들어, 재판소는 국가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형사책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조사가 종결되는 상황에서는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적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Association "21 December 1989" and Others v. Romania*, § 144).

179.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국가 대리인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 사망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형의 일부 사면과 비슷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관들이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재판소 판례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li and Ayşe Duran v. Turkey*, § 69).

180. 그 밖에도, 재판소의 심사는 국내법원이 처음 선고한 형의 강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집행 방식도 포함한다(*Enukidze and Girgvliani v. Georgia*, §§ 269 및 275, 재판소가 조기 석방과 관련하여 기결수들에게 보인 불합리한 관용 등을 이유로 협약 제2조의 절차적 측면에 따라 제2조 위반 사실을 확인한 사건; *Kitanovska Stanojkovic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33, 재판소가 구금형 집행의 부당한 지연을 이유로 협약 제2조의 절차적 측면에 따라 제2조 위반 사실을 확인한 사건).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2조에 따라 요구되는 범죄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요건 또한 국가가 부당한 지체 없이 종국판결을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생명권의

맥락에서 부과된 형의 집행이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절차적 의무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보았다(*Kitanovska Stanojkovic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32, *Akeliené v. Lithuania*, § 85, 재판소가 국가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도주한 기결수를 검거하고 범죄인 인도를 위해 취한 조치를 고려한 후, 제2조의 절차적 측면에 따라 제2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건).

181. 따라서, 재판소는 민간인에 대한 살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사면을 허가하는 조치가 이러한 살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필연적으로 책임자를 면책한다는 점에서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Marguš v. Croatia* [GC], § 127).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미래에 공직을 맡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국민에게 완전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것이다(*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 171).

182. 수형자 이송과 관련된 상황에서 국가의 해당 의무에 대한 쟁점이 제기된 최근의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선고국인 헝가리가 다른 국가(아제르바이잔)로 이송된 수형자가 형을 마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의 조치로 인해 사실상 해당 수형자의 형이 면제되었고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의 조치가 개인의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할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다(*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각각 §§ 195-197 및 §§ 163-173).

183.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남자 형제가 사인(私人)에 의해 살해된 것에 대해 제기된 형사절차에서 청구인이 민간 당사자로서 참여하고자 제출한 신청을 국내법원이 거절한 최근의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2조의 목적상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국가의 의무에 따라 청구인에게 (긴밀한 관계였던 유일한 가족이자 사망한 남자 형제의 유일한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인이 입은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Vanyo Todorov v. Bulgaria*, § 66).

## H. 절차적 의무의 재개

184. 절차적 의무는 국가기관이 사망 상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간 전체에 걸쳐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Šilih v. Slovenia* [GC], § 157).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살인 사건의 정황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의무가 재개되는지, 어떤 형태로 재개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불법적인 살인의 가해자의 신원 확인 및 궁극적인 기소 또는 처벌과 관련하여 타당해 보이거나 신뢰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거나 이에 관한 증거 또는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국가기관은 추가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Brecknell v. the United Kingdom*, § 71).

185. 절차적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후속 조사의 성격과 범위는 필연적으로 각 특정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예상되는 성격 및 범위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Harri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51).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목격자가 사건을 목격한 위치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건 상황을 신뢰성 있게 진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 조사가 출처 또는 주장된 새로운 증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Cerf v. Turkey*, § 65). 또한, 이러한 사건의 조사 기준은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고 증인이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잘 기억할 때 증인신문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최근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과 매우 다르다(*Gurtekin and Others v. Cyprus* (dec.), § 21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186. 재개된 수사 활동의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은 기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권리가 있다(*Brecknell v. the United Kingdom*, § 71).

187. 하지만, 특히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공익이 명확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후에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조사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이유가 없다(*Jelić v. Croatia*, § 52).

## I. 젠더 기반 폭력 및 증오범죄에 대한 조사

188. 공격 상황이 젠더 기반 폭력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 국가기관은 조사 활동을 수행할 때 특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떤 공격이 성과 관련된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경우,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Tërshana v. Albania*, § 160).

189. 인종차별에 기초한 폭력 혐의가 제기된 경우, 사회가 인종차별을 비난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재천명하고 국가기관이 인종차별에 기초한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소수민족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에 신뢰를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적극적이고 공평하게 추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Menson v. the United Kingdom* (dec.); *Gjikondi and Others v. Greece*, § 118).

190. 재판소는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폭력과 야만성을 인종차별과 관련 없는 사건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루는 것은 기본권을 특히 훼손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성격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대해 각각 적절한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2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14조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 160).

## J. 국경 밖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절차적 의무

191.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체약국이 절차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min and Others v. Cyprus, Greece and the United Kingdom* (dec.)). 단,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41-242).

192. 그 밖에도, 제2조는 회원국의 형법이 자국 국민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44).

193. 그러나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재판소는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가 다른 관할권에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증거가 위치한 국가는 사법공조 요청을 받을 경우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45).

194. 특히, 불법적인 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에 초국경적 요소가 있는 경우, 재판소는 가해자가 도주하고 범죄에 대한 증거가 소재한 국가의 국가기관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제2조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Cummin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O'Loughli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195. 한 체약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둘 이상의 체약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집행조약으로서의 협약이 가진 특별한 성격상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국들은 살인사건의 정황을 규명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서로 효과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제2조는 두 국가 모두에 대해 서로 협력할 양방향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을 요청할 의무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 또한 내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성격과 범위는 각 특정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 232-233).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EU 회원국이 유럽 체포 영장(European Arrest Warrant, EAW) 제도의 틀 안에서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야 하며, 도주한 테러범을 기소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omeo Castaño v. Belgium*, §§ 41-42 및 79-82).

196.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력 의무가 결과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수단의 의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국들이 상호 법적 지원과 형사공조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협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협력에 대한 절차적 의무는 협력을 요청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경우 해당국이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적절한 협력 메커니즘을 발동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반될 것이며, 협력을 요청받은 국가의 경우 해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거나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 협력을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만 위반될 것이다(*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 235-236). 예를 들어, 유럽 체포 영장을 통해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자와 관련하여, 집행 국가의 법원이 불완전하고 오래된 자료에 근거하여 요청 국가의 구금환경이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린 판결은 협력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omeo Castaño v. Belgium*, §§ 85-90). 한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실효적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실체(*de facto* entity)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협력 의무는 이들 국가가 제3국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더 비공식적이거나 간접적인 다른 협력 경로를 통해 협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관련국들이 관련 국제조약에서 예견된 협력 메커니즘을 벗어난 모든 비공식적이거나 임시적인 협력 채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제법에 적용되는 규범과 원칙의 표현인 해당 국제조약에 따라 협력을 추구했는지 고려한다(*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 237-238).

## K.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절차적 의무

197. 재판소는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가 무력 충돌 상황을 포함해 안보에 도전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계속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망 사건이 일반화된 폭력, 무력 충돌 또는 반란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조사관이 조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조사 방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조사가 지연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의무는 안보에 도전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생명권 침해 혐의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수행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내포한다(*Hanan v. Germany* [GC], § 204; *Georgia v. Russia (II)* [GC] (본안), § 326).

198. 하지만, 재판소는 무력 충돌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가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Georgia v. Russia (II)* [GC] (본안), § 327). 따라서 (자국 영토 바깥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상황의 적극적 교전의 결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도전/제약이 조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회원국 영토에서 민간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조사 활동의 실현 가능성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회원국 영토에서 민간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조사 활동 포함), 재판소는 해당 회원국의 민간 조사기관이 수행한 조사에 적용되는 기준이 역외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Hanan v. Germany* [GC], § 200).

## L.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절차적 의무

19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소는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의 범위를 과실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었거나 생명을 잃은 상황에까지 확대했다. 이와 같이 적용 범위를 확대할 때, 재판소는 비록 이러한 사건의 상황에 맞춰 조정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일반 원칙, 특히 조사 기준을 변경했다.

### 1. 일반 원칙

200. 재판소는 국내법 체계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사망을 유발한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 협약 제2조에 따른 국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Banel v. Lithuania*, § 70).

201. 따라서, 사인(私人)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국 관할권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에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귀책 당사자에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Fergec v. Croatia*, § 32, 피자가게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건과 관련된 절차의 실효성에 관한 사건; *Ciechońska v. Poland*, § 66, 청구인의 남편이 휴양지에서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해 제기된 절차에 관한 사건; *Anna Todorova v. Bulgaria*, § 72, 청구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제기된 절차에 관한 사건; *İlbeyi Kemaloğlu and Meriye Kemaloğlu v. Turkey*, § 38, 청구인의 7세 아동이 눈보라 속에서 집으로 걸어가려다 동사한 사고에 관한 사건; *Kotelnikov v. Russia*, §§ 99-101,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청구인에 관한 사건).

202. 의료 관련 상황에서, 재판소는 제2조의 절차적 의무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관계없이 의료전문직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결정하고 해당 책임자를 밝힐 수 있도록 국가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Šilih v. Slovenia* [GC], § 192;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14).

203.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생명권 또는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가 고의로 침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내법 체계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법원에서 단독으로 또는 형사법원의 구제와 결합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모든 책임 소재가 규명될 수 있으며 적절한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할 적극적 의무가 충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Calvelli and Ciglio v. Italy* [GC], § 51; *Mastromatteo v. Italy* [GC], § 90; *Vo v. France* [GC], § 90; *Anna Todorova v. Bulgaria*, § 73; *Cevrioğlu v. Turkey*, § 54;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137 및 215). 국가 대리인 또는 특정 직업 종사자가 관련된 경우, 징계 조치도 예상될 수 있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 159 및 *Zinatullin v. Russia*, § 32).

204.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협약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채택될 수 있으며,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하나의 특정 조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적극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가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Cevrioğlu v. Turkey*, §§ 53 및 55;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16).

205. 따라서 재판소는 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적용되는 법적 구제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귀책 당사자에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판소는 추상적으로 법 제도를 평가하는 대신, 해당 법체계 전체 차원에 의해 당해 사건이 실제로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Valeriy Fuklev v. Ukraine*, § 67).

2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일지라도, 협약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범죄 수사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Cevrioğlu v. Turkey*, § 54;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15). 재판소는 생명권을 침해한 과실이 단순한 판단 착오나 부주의를 넘어서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확인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위험한 산업활동 관련 상황(*Öneryıldız v. Turkey* [GC], § 71)
- 진료 거부 관련 상황(*Asiye Genç v. Turkey*, § 73)
- 군사활동 관련 상황(*Oruk v. Turkey*, §§ 50 and 65)
- 위험물 운송 관련 상황(*Sinim v. Turkey*, §§ 62-64)
- 도로 안전 관련 상황(*Smiljanić v. Croatia*, § 93)
- 가정폭력 사건의 경찰 부작위 관련 상황(*Tkheldize v. Georgia*, §§ 59-60; see also *Penati v. Italy*, §§ 158-162, 재판소가 사회복지부서의 보호 제도가 시행 중인 접견 도중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한 것에 대해 범죄 수사 또한 수행할 것을 요구한 사건)

207.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사고나 다른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처음부터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살인 사건이라는 가설에 대해 적어도 사실관계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협약은 사망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는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조사 의무는 특히 어느 하나의 가설을 반박하거나 확정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므로 조사 결과 궁극적으로 사고 가설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 133;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 160-164, 재판소가 이 논점을 길게 설명한 사건).

208. 초기 조사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고의로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효과적인 범죄 수사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민사 구제로도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 163; *Zinatullin v. Russia*, § 35).

209. 의료 관련 상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의료전문직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결정하기 위해 수립된 국내 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요건이 이 상황에 내재하는 요건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위계적 또는 제도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원인을 결정하는 절차에서 평가 수행을 맡은 모든 당사자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로부터 공식적이고 사실상의 독립성을 누릴 것을 요구한다(*Bajić v. Croatia*, § 90). 이 요건은 전문가 증인이 의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Karpisiewicz v. Poland* (dec.)). 의료 보고서는 재판소가 매우 복잡한 의료과실의 쟁점을 검토할 때 결정적인 자료로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소송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Bajić v. Croatia*, § 95;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17).

210. 과실 상황에서 관련 절차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Šilih v. Slovenia* [GC], § 196; *Cavit Tinarlıoğlu v. Turkey*, § 115; *Fergec v. Croatia*, § 38).

211. 특히, 재판소는 사망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절차와 관련된 제2조 사건에서, 국가가 이 소송절차를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사실은 해당 소송절차가 협약에 따른 피청구국의 적극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결함이 있는 소송절차임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판결했다(*Bilbija and Blažević v. Croatia*, § 107;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19).

212. 의료 상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개별 사건에서 협약 제2조에 내재한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별도로, 병원에서의 의료과실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따라 신속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료 과정에 대한 사실과 진료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수에 대한 지식은 관련 병원과 의료진이 잠재적 결함을 보완하고 유사한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은 진료를 받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Oyal v. Turkey*, § 76).

213. 관할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대리인에 의한 치명적인 힘의 행사에 관한 사건이나 사고에 관한 사건과 달리, 의도치 않게 사망이 발생한 의료과실 관련 사건에서는 고인의 친척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국가의 절차적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Šilih v. Slovenia* [GC], § 156;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20).

214. 이러한 맥락에서도, 재판소는 이 절차적 의무가 결과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수단의 의무임을 강조한다(*Banel v. Lithuania*, § 66;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 221). 따라서 국내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피청구국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ibid.*, § 221; *E.M. and Others v. Romania* (dec.), § 50).

## 2. 실제 사례

### a. 의료과실 혐의에 관한 사건

215.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 등에서 해당 법체계가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절차적 의무와 일치하는 적절하고 적시의 대응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국내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 사건(*Byrzykowski v. Poland*, §§ 114-116; *Šilih v. Slovenia* [GC], §§ 202-210; *Zafer Öztürk v. Turkey*, §§ 56-57; *Bilbija and Blažević v. Croatia*, §§ 105-107)
- 의료 전문가와 피고의 직업적 관계에서 의료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Bajić v. Croatia*, §§ 98-102; 및 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Karpisiewicz v. Poland* (dec.))
- 법의학 전문가와 조사기관의 협력이 부족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던 사건(*Eugenia Lazăr v. Romania*, §§ 81-85)
- 국내법 체계에 사망한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Sarishvili-Bolkvadze v. Georgia*, §§ 90-98)
- 민사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해 결정된 손해배상금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건(*Scripnic v. the Republic of Moldova*, §§ 43-48)

216. 반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개인의 형사, 징계 또는 민사 책임이 규명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Vo v. France* [GC], § 95 (비자발적 임신중절)
- *Ursu v. Romania* (dec.) (심정지로 인한 사망)
- *Maruseva v. Russia* (dec.) (심장 수술을 받던 아동의 사망)
- *Sevim Güngör v. Turkey* (dec.) (기관지 폐렴으로 병원에서 노인 환자 사망)
- *Besen v. Turkey* (dec.)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후 사망)
- *Vakrilov v. Bulgaria* (dec.), § 41 (급성 심혈관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
- *E.M. and Others v. Romania* (dec.), § 56 (수술 후 세균 감염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사망)
- *Buksa v. Poland* (dec.), §§ 15-16 (의료진이 진단하지 못했던 간의 복부 비(非)악성 종양으로 인한 아기 사망)

## b. 사고에 관한 사건

217.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 등에서 국가가 사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사법적 대응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 국가기관의 부주의로 인해 국내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 사건(*Anna Todorova v. Bulgaria*, § 83; *Igor Shevchenko v. Ukraine*, § 61; *Starčević v. Croatia*, § 67; *Mučibabić v. Serbia*, § 135; *Sidika İmren v. Turkey*, § 67; *Fergec v. Croatia*, §§ 41-42)
- 증거 획득 방법의 결함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 및 후속 절차에서의 피고의 책임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Ciechońska v. Poland*, § 75; *Antonov v. Ukraine*, § 50; *Vovk and Bogdanov v. Russia*, § 77).

218. 반면,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명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형사, 징계 또는 민사 책임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Furdík v. Slovakia* (dec.) (등산객 사망)
- *Koc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 28 (놀이터에서 무거운 콘크리트 기둥이 추락하여 아동 사망)
- *Cavit Tınarlıoğlu v. Turkey*, § 125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청구인이 모터보트와 부딪혀 입은 심각한 부상)
- *Mikhno v. Ukraine*, § 151 (에어쇼에서 군용기가 추락하여 관객 사망)
- *Çakmak v. Turkey* (dec.), § 34 (초등학교 마당에서 술방울을 줍다가 청구인 친척이 감전사)
- *Aktaş v. Turkey* (dec.), § 29 (청구인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픽업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인용 사례에 사용할 수 있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번역본들은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후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A and B v. Romania*, nos. 48442/16 and 48831/16, 2 June 2020  
*Abuyeva and Others v. Russia*, no. 27065/05, 2 December 2010  
*Adiyaman v. Turkey* (dec.), no. 58933/00, 9 February 2010  
*Aftanache v. Romania*, no. 999/19, 26 May 2020  
*Ağdaş v. Turkey*, no. 34592/97, 27 July 2004  
*Ahmet Özkan and Others v. Turkey*, no. 21689/93, 6 April 2004  
*Akdeniz and Others v. Turkey*, no. 23954/94, 31 May 2001  
*Akdoğan v. Turkey*, no. 46747/99, 18 October 2005  
*Akelienė v. Lithuania*, no. 54917/13, 16 October 2018  
*Akkum and Others v. Turkey*, no. 21894/93, ECHR 2005-II (extracts)  
*Aktaş v. Turkey*, no. 24351/94, ECHR 2003-V (extracts)  
*Al Nashiri v. Poland*, no. 28761/11, 24 July 2014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no. 61498/08, ECHR 2010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55721/07, ECHR 2011  
*Albekov and Others v. Russia*, no. 68216/01, 9 October 2008

*Ali and Ayşe Duran v. Turkey*, no. 42942/02, 8 April 2008  
*Alkın v. Turkey*, no. 75588/01, 13 October 2009  
*Altuğ and Others v. Turkey*, no. 32086/07, 30 June 2015  
*Amuyeva and Others v. Russia*, no. 17321/06, 25 November 2010  
*Andronicou and Constantinou v. Cyprus*, 9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Anguelova v. Bulgaria*, no. 38361/97, ECHR 2002-IV  
*Anna Todorova v. Bulgaria*, no. 23302/03, 24 May 2011  
*Antonov v. Ukraine*, no. 28096/04, 3 November 2011  
*Armani Da Silva v. the United Kingdom* [GC], no. 5878/08, 30 March 2016  
*Arskaya v. Ukraine*, no. 45076/05, 5 December 2013  
*Asiye Genç v. Turkey*, no. 24109/07, 27 January 2015  
*Aslakhanova and Others v. Russia*, nos. 2944/06 and 4 others, 18 December 2012  
*Association “21 December 1989” and Others v. Romania*, nos. 33810/07 and 18817/08, 24 May 2011  
*Ataman v. Turkey*, no. 46252/99, 27 April 2006  
*Avşar v. Turkey*, no. 25657/94, ECHR 2001-VII (extracts)  
*Aydoğdu v. Turkey*, no. 40448/06, 30 August 2016

## —B—

*Babar Ahma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24027/07 and 4 others, 6 July 2010  
*Bajić v. Croatia*, no. 41108/10, 13 November 2012  
*Bakan v. Turkey*, no. 50939/99, 12 June 2007  
*Banel v. Lithuania*, no. 14326/11, 18 June 2013  
*Barbu Anghelescu v. Romania*, no. 46430/99, 5 October 2004  
*Bayrak and Others v. Turkey*, no. 42771/98, 12 January 2006  
*Baysayeva v. Russia*, no. 74237/01, 5 April 2007  
*Bazorkina v. Russia*, no. 69481/01, 27 July 2006  
*Beker v. Turkey*, no. 27866/03, 24 March 2009  
*Beksultanova v. Russia*, no. 31564/07, 27 September 2011  
*Bektaş and Özalp v. Turkey*, no. 10036/03, 20 April 2010  
*Benzer and Others v. Turkey*, no. 23502/06, 12 November 2013  
*Besen v. Turkey* (dec.), no. 48915/09, 19 June 2012  
*Betayev and Betayeva v. Russia*, no. 37315/03, 29 May 2008  
*Bilbija and Blažević v. Croatia*, no. 62870/13, 12 January 2016  
*Binnur Uzun and Others v. Turkey*, no. 28678/10, 19 September 2017  
*Bişar Ayhan v. Turkey*, nos. 42329/11 and 47319/11, 18 May 2021  
*Bljakaj and Others v. Croatia*, no. 74448/12, 18 September 2014  
*Boso v. Italy* (dec.), no. 50490/99, 5 September 2002  
*Boukrourou and Others v. France*, no. 30059/15, 16 November 2017  
*Boychenko v. Russia*, no. 8663/08, 12 October 2021  
*Branko Tomašić and Others v. Croatia*, no. 46598/06, 15 January 2009  
*Brecknell v. the United Kingdom*, no. 32457/04, 27 November 2007  
*Brincat and Others v. Malta*, nos. 60908/11 and 4 others, 24 July 2014  
*Bubbins v. the United Kingdom*, no. 50196/99, ECHR 2005-II (extracts)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15339/02 and 4 others, ECHR 2008 (extracts)  
*Buksa v. Poland* (dec.), no. 75749/13, 31 May 2016  
*Buldan v. Turkey*, no. 28298/95, 20 April 2004  
*Byrzykowski v. Poland*, no. 11562/05, 27 June 2006

—C—

*Çakmak v. Turkey* (dec.), no. 34872/09, 21 November 2017  
*Çakmakçı v. Turkey* (dec.), no. 3952/11, 2 May 2017  
*Calvelli and Ciglio v. Italy* [GC], no. 32967/96, ECHR 2002-I  
*Carter v. Russia*, no. 20914/07, 21 September 2021  
*Cavit Tınarlıoğlu v. Turkey*, no. 3648/04, 2 February 2016  
*Cecilia Pereira Henriques and Others v. Luxembourg* (dec.), no. 60255/00, 26 August 2003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no. 47848/08, ECHR 2014  
*Cerf v. Turkey*, no. 12938/07, 3 May 2016  
*Cevrioğlu v. Turkey*, no. 69546/12, 4 October 2016  
*Choreftakis and Choreftaki v. Greece*, no. 46846/08, 17 January 2012  
*Ciechońska v. Poland*, no. 19776/04, 14 June 2011  
*Cummin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7306/05, 13 December 2005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D—

*De Donder and De Clippel v. Belgium*, no. 8595/06, 6 December 2011  
*Denizci and Others v. Cyprus*, nos. 25316-25321/94 and 27207/95, ECHR 2001-V  
*Derenik Mkrtchyan and Gayane Mkrtchyan v. Armenia*, no. 69736/12, 30 November 2021  
*Dodov v. Bulgaria*, no. 59548/00, 17 January 2008  
*Dumpe v. Latvia* (dec.), no. 71506/13, 16 October 2018  
*Dzieciak v. Poland*, no. 77766/01, 9 December 2008

—E—

*E.M. and Others v. Romania* (dec.), no. 20192/07, 3 June 2014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16 December 1992, Series A no. 247-B  
*Emars v. Latvia*, no. 22412/08, 18 November 2014  
*Emin and Others v. Cyprus, Greece and the United Kingdom* (dec.), nos. 59623/08 and 6 others, 3 June 2010  
*Enukidze and Girgvliani v. Georgia*, no. 25091/07, 26 April 2011  
*Enzile Özdemir v. Turkey*, no. 54169/00, 8 January 2008  
*Erdoğan and Others v. Turkey*, no. 19807/92, 25 April 2006  
*Eremiášová and Pechová v. the Czech Republic* (revision), no. 23944/04, 20 June 2013  
*Ergi v. Turkey*, 28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V  
*Estamirov and Others v. Russia*, no. 60272/00, 12 October 2006  
*Estemirova v. Russia*\*, no. 42705/11, 31 August 2021  
*Eugenia Lazăr v. Romania*, no. 32146/05, 16 February 2010  
*Evans v. the United Kingdom* [GC], no. 6339/05, ECHR 2007-I  
*Evrin Öktem v. Turkey*, no. 9207/03, 4 November 2008

—F—

*F.G. v. Sweden* [GC], no. 43611/11, 23 March 2016  
*Fergec v. Croatia*, no. 68516/14, 9 May 2017  
*Fernandes de Oliveira v. Portugal* [GC], no. 78103/14, 31 January 2019

*Finogenov and Others v. Russia* (dec.), nos. 18299/03 and 27311/03, 18 March 2010  
*Finogenov and Others v. Russia*, nos. 18299/03 and 27311/03, ECHR 2011 (extracts)  
*Fountas v. Greece*, no. 50283/13, 3 October 2019  
*Furdík v. Slovakia* (dec.), no 42994/05, 2 December 2008

## —G—

*G.N. and Others v. Italy*, no. 43134/05, 1 December 2009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9793/17, 27 June 2017  
*Georgia v. Russia (II)* [GC] (merits), no. 38263/08, 21 January 2021  
*Gheorghe v. Romania* (dec.), no. 19215/04, 22 September 2005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no. 23458/02, ECHR 2011 (extracts)  
*Gjikondi and Others v. Greece*, no. 17249/10, 21 December 2017  
*Glas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61827/00, 18 March 2003  
*Gökdemir v. Turkey* (dec.), no. 66309/09, 19 May 2015  
*Gongadze v. Ukraine*, no. 34056/02, ECHR 2005-XI  
*Gorovenko and Bugara v. Ukraine*, nos. 36146/05 and 42418/05, 12 January 2012  
*Güleç v. Turkey*, 27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V  
*Gurtekin and Others v. Cyprus* (dec.), nos. 60441/13 and 2 others, 11 March 14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no. 36925/07, 29 January 2019

## —H—

*Haas v. Switzerland*, no. 31322/07, ECHR 2011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750/09, ECHR 2014  
*Hanan v. Germany* [GC], no. 4871/16, 16 February 2021  
*Harri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4301/13, 25 March 2014  
*Hemsworth v. the United Kingdom*, no. 58559/09, 16 July 2013  
*Hiller v. Austria*, no. 1967/14, 22 November 2016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nos.47039/11 and 358/12, ECHR 2012 (extracts)  
*Hugh Jordan v. the United Kingdom*, no. 24746/94, 4 May 2001  
*Huohvanainen v. Finland*, no. 57389/00, 13 March 2007

## —I—

*Igor Shevchenko v. Ukraine*, no. 22737/04, 12 January 2012  
*İkincisoğlu v. Turkey*, no. 26144/95, 27 July 2004  
*İlbeyi Kemaloğlu and Meriye Kemaloğlu v. Turkey*, no. 19986/06, 10 April 2012  
*İlhan v. Turkey* [GC], no. 22277/93, ECHR 2000-VII  
*Iorga v. Moldova*, no. 12219/05, 23 March 2010  
*İpek v. Turkey*, no. 25760/94, ECHR 2004-II (extracts)  
*Is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57947/00 and 2 others, 24 February 2005

## —J—

*Jaloud v. the Netherlands* [GC], no. 47708/08, ECHR 2014  
*Jelić v. Croatia*, no. 57856/11, 12 June 2014  
*Jeanty v. Belgium*, no. 82284/17, 31 March 2020



—K—

*Kagirov v. Russia*, no. 36367/09, 23 April 2015  
*Kakoulli v. Turkey*, no. 38595/97, 22 November 2005  
*Kalender v. Turkey*, no. 4314/02, 15 December 2009  
*Karpisiewicz v. Poland* (dec.), no. 14730/09, 11 December 2012  
*Kats and Others v. Ukraine*, no. 29971/04, 18 December 2008  
*Kaya v. Turkey*,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Keenan v. the United Kingdom*, no. 27229/95, ECHR 2001-III  
*Keller v. Russia*, no. 26824/04, 17 October 2013  
*Kell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0054/96, 4 May 2001  
*Ketreb v. France*, no. 38447/09, 19 July 2012  
*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 nos. 57942/00 and 57945/00, 24 February 2005  
*Khayrullina v. Russia*, no. 29729/09, 19 December 2017  
*Kılıç v. Turkey*, no. 22492/93, ECHR 2000-III  
*Kılınç and Others v. Turkey*, no. 40145/98, 7 June 2005  
*Kişmir v. Turkey*, no. 27306/95, 31 May 2005  
*Kitanovska Stanojkovic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2319/14, 13 October 2016  
*Klaas v. Germany*, 22 September 1993, Series A no. 269  
*Koce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41107/07, 22 October 2013  
*Koku v. Turkey*, no. 27305/95, 31 May 2005  
*Kolevi v. Bulgaria*, no. 1108/02, 5 November 2009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nos. 17423/05 and 5 others, 28 February 2012  
*Koseva v. Bulgaria* (dec.), no. 6414/02, 22 June 2010  
*Kotelnikov v. Russia*, no. 45104/05, 12 July 2016  
*Kotilainen and Others v. Finland*, no. 62439/12, 17 September 2020  
*Krastanov v. Bulgaria*, no. 50222/99, 30 September 2004  
*Kudra v. Croatia*, no. 13904/07, 18 December 2012  
*Kukhalashvili and Others v. Georgia*, nos. 8938/07 and 41891/07, 2 April 2020.  
*Kurt v. Austria* [GC], no. 62903/15, 15 June 2021  
*Kushtova and Others v. Russia (no. 2)*, no. 60806/08, 21 February 2017

—L—

*L.C.B. v. the United Kingdom*, 9 June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Leray and Others v. France* (dec.), no. 44617/98, 16 January 2001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no. 56080/13, 19 December 2017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no. 46043/14, ECHR 2015 (extracts)  
*Lapshin v. Azerbaijan*, no. 13527/18, 20 May 2021

—M—

*M. Özel and Others v. Turkey*, nos. 14350/05 and 2 others, 17 November 2015  
*Magomadov v. Russia*, no. 68004/01, 12 July 2007  
*Mahmut Kaya v. Turkey*, no. 22535/93, ECHR 2000-III  
*Maiorano and Others v. Italy*, no. 28634/06, 15 December 2009  
*Makaratzis v. Greece* [GC], no. 50385/99, ECHR 2004-XI  
*Makharadze and Sikharulidze v. Georgia*, no. 35254/07, 22 November 2011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no. 17247/13, 26 May 2020

*Malik Babayev v. Azerbaijan*, no. 30500/11, 1 June 2017  
*Mansuroğlu v. Turkey*, no. 43443/98, 26 February 2008  
*Marguš v. Croatia* [GC], no. 4455/10, ECHR 2014 (extracts)  
*Marius Alexandru and Marinela Ștefan v. Romania*, no. 78643/11, 24 March 2020  
*Maruseva v. Russia* (dec.), no. 28602/02, 1 June 2006  
*Mastromatteo v. Italy* [GC], no. 37703/97, ECHR 2002-VIII  
*Mazepa and Others v. Russia*, no. 15086/07, 17 July 2018  
*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7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4  
*McKerr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8883/95, 4 April 2000  
*Medova v. Russia*, no. 25385/04, 15 January 2009  
*Mehmet Şentürk and Bekir Şentürk v. Turkey*, no. 13423/09, ECHR 2013  
*Mendy v. France* (dec.), no. 71428/12, 4 September 2018  
*Menso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7916/99, ECHR 2003-V  
*Meryem Çelik and Others v. Turkey*, no. 3598/03, 16 April 2013  
*Mezhiyeva v. Russia*, no. 44297/06, 16 April 2015  
*Mikayil Mammadov v. Azerbaijan*, no. 4762/05, 17 December 2009  
*Mikhno v. Ukraine*, no. 32514/12, 1 September 2016  
*Mikiyeva and Others v. Russia*, nos. 61536/08 and 4 others, 30 January 2014  
*Mitić v. Serbia*, no. 31963/08, 22 January 2013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nos. 10865/09 and 2 others, ECHR 2014 (extracts)  
*Mojsiejew v. Poland*, no. 11818/02, 24 March 2009  
*Molie v. Romania* (dec.), no. 13754/02, 1 September 2009  
*Mosendz v. Ukraine*, no. 52013/08, 17 January 2013  
*Mučibabić v. Serbia*, no. 34661/07, 12 July 2016  
*Musayeva and Others v. Russia*, no. 74239/01, 26 July 2007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no. 24014/05, 14 April 2015

—N—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nos. 43577/98 and 43579/98, ECHR 2005-VII  
*Nafiye Çetin and Others v. Turkey*, no. 19180/03, 7 April 2009  
*Nencheva and Others v. Bulgaria*, no. 48609/06, 18 June 2013  
*Nesibe Haran v. Turkey*, no. 28299/95, 6 October 200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no. 41720/13, 25 June 2019  
*Nitecki v. Poland* (dec.), no. 65653/01, 21 March 2002  
*Nuray Şen v. Turkey (no. 2)*, no. 25354/94, 30 March 2004

—O—

*O’Loughli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3274/04, 25 August 2005  
*Oğur v. Turkey* [GC], no. 21594/93, ECHR 1999-III  
*Olewnik-Cieplińska and Olewnik v. Poland*, no. 20147/15, 5 September 2019  
*Öneryıldız v. Turkey* [GC], no. 48939/99, ECHR 2004-XII  
*Opuz v. Turkey*, no. 33401/02, ECHR 2009  
*Orhan v. Turkey*, no. 25656/94, 18 June 2002  
*Oruk v. Turkey*, no. 33647/04, 4 February 2014  
*Osman v. the United Kingdom*, 28 Octo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I  
*Osmanoğlu v. Turkey*, no. 48804/99, 24 January 2008  
*Oyal v. Turkey*, no. 4864/05, 23 March 2010  
*Özalp and Others v. Turkey*, no. 32457/96, 8 April 2004



—P—

*Pal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4704/04, 15 February 2011  
*Parfitt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8533/21, 20 April 2021  
*Paşa and Erkan Erol v. Turkey*, no. 51358/99, 12 December 2006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no. 46477/99, ECHR 2002-II  
*Penati v. Italy*, no. 44166/15, 11 May 2021  
*Pentiacova and Others v. Moldova* (dec.), no. 14462/03, ECHR 2005-I  
*Pereira Henriques v. Luxembourg*, no. 60255/00, 9 May 2006  
*Perevedentsevy v. Russia*, no. 39583/05, 24 April 2014  
*Perk and Others v. Turkey*, no. 50739/99, 28 March 2006  
*Pitalev v. Russia*, no. 34393/03, 30 July 2009  
*Powell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5305/99, ECHR 2000-V  
*Pretty v. the United Kingdom*, no. 2346/02, ECHR 2002-III

—R—

*R.R. and Others v. Hungary*, no. 19400/11, 4 December 2012  
*Rajkowska v. Poland* (dec.), no. 37393/02, 27 November 2007  
*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no. 52391/99, ECHR 2007-II  
*Rantsev v. Cyprus and Russia*, no. 25965/04, ECHR 2010 (extracts)  
*Renolde v. France*, no. 5608/05, ECHR 2008 (extracts)  
*Reynolds v. the United Kingdom*, no. 2694/08, 13 March 2012  
*Ribcheva and Others v. Bulgaria*, nos. 37801/16 and 2 others, 30 March 2021  
*Romeo Castaño v. Belgium*, no. 8351/17, 9 July 2019  
*Rupa v. Romania* (no. 1), no. 58478/00, 16 December 2008

—S—

*Salman v. Turkey* [GC], no. 21986/93, ECHR 2000-VII  
*Şandru and Others v. Romania*, no. 22465/03, 8 December 2009  
*Saoud v. France*, no. 9375/02, 9 October 2007  
*Sarishvili-Bolkvadze v. Georgia*, no. 58240/08, 19 July 2018  
*Sašo Gorgie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49382/06, ECHR 2012 (extracts)  
*Scavuzzo-Hager and Others v. Switzerland*, no. 41773/98, 7 February 2006  
*Scripnic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63789/13, 13 April 2021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15028/09, 23 June 2015  
*Semache v. France*, no. 36083/16, 21 June 2018  
*Sergey Shevchenko v. Ukraine*, no. 32478/02, 4 April 2006  
*Sevim Güngör v. Turkey* (dec.), no. 75173/01, 14 April 2009  
*Seyhan v. Turkey*, no. 33384/96, 2 November 2004  
*S.F. v. Switzerland*, no. 23405/16, 30 June 2020  
*Shafiyeva v. Russia*, no. 49379/09, 3 May 2012  
*Sıdıka İmren v. Turkey*, no. 47384/11, 13 September 2016  
*Šilih v. Slovenia* [GC], no. 71463/01, 9 April 2009  
*Şimşek and Others v. Turkey*, nos. 35072/97 and 37194/97, 26 July 2005  
*Sinim v. Turkey*, no. 9441/10, 6 June 2017  
*Şirin Yılmaz v. Turkey*, no. 35875/97, 29 July 2004  
*Slimani v. France*, no. 57671/00, ECHR 2004-IX (extracts)  
*Smiljanić v. Croatia*, no. 35983/14, 25 March 2021

*Soare and Others v. Romania*, no. 24329/02, 22 February 2011  
*Soares Campos v. Portugal*, no. 30878/16, 14 January 2020  
*Solska and Rybicka v. Poland*, nos. 30491/17 and 31083/17, 20 September 2018  
*Starčević v. Croatia*, no. 80909/12, 13 November 2014  
*Stoyanovi v. Bulgaria*, no. 42980/04, 9 November 2010

—T—

*Tag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26562/07 and 6 others, 13 April 2017  
*Tahsin Acar v. Turkey* [GC], no. 26307/95, ECHR 2004-III  
*Taniş and Others v. Turkey*, no. 65899/01, ECHR 2005-VIII  
*Tanlı v. Turkey*, no. 26129/95, ECHR 2001-III (extracts)  
*Tarariyeva v. Russia*, no. 4353/03, ECHR 2006-XV (extracts)  
*Tekin and Arslan v. Belgium*, no. 37795/13, 5 September 2017  
*Tërshana v. Albania*, no. 48756/14, 4 August 2020  
*Timurtaş v. Turkey*, no. 23531/94, ECHR 2000-VI  
*Tkheldze v. Georgia*, no. 33056/17, 8 July 2021  
*Trévalec v. Belgium*, no. 30812/07, 14 June 2011  
*Trubnikov v. Russia*, no. 49790/99, 5 July 2005  
*Turluyeva v. Russia*, no. 63638/09, 20 June 2013

—U—

*Ursu v. Romania* (dec.), no. 58670/00, 3 May 2005

—V—

*Van Colle v. the United Kingdom*, no. 7678/09, 13 November 2012  
*Vakrilov v. Bulgaria* (dec.), no. 18698/06, 9 October 2012  
*Valeriy Fuklev v. Ukraine*, no. 6318/03, 16 January 2014  
*Vanyo Todorov v. Bulgaria*, no. 31434/15, 21 July 2020  
*Vardosanidze v. Georgia*, no. 43881/10, 7 May 2020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nos. 16064/90 and 8 others, ECHR 2009  
*Vasîlca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69527/10, 11 February 2014  
*Velikova v. Bulgaria*, no. 41488/98, ECHR 2000-VI  
*Vilnes and Others v. Norway*, nos. 52806/09 and 22703/10, 5 December 2013  
*Vo v. France* [GC], no. 53924/00, ECHR 2004-VIII  
*Volk v. Slovenia*, no. 62120/09, 13 December 2012  
*Vovk and Bogdanov v. Russia*, no. 15613/10, 11 February 2020

—W—

*Wasilewska and Kałucka v. Poland*, nos. 28975/04 and 33406/04, 23 February 2010  
*Waresiak v. Poland* (dec.), no. 58558/13, 10 March 2020.  
*Wiater v. Poland* (dec.), no. 42290/08, 15 May 2012

—Y—

*Yabansu and Others v. Turkey*, no. 43903/09, 12 November 2013  
*Yotova v. Bulgaria*, no. 43606/04, 23 October 2012  
*Younger v. the United Kingdom* (dec.), no. 57420/00, ECHR 2003-I  
*Yukhymovych v. Ukraine*, no. 11464/12, 17 December 2020  
*Yüksel Erdoğan and Others v. Turkey*, no. 57049/00, 15 February 2007

—Z—

*Z v. Poland*, no. 46132/08, 13 November 2012  
*Zafer Öztürk v. Turkey*, no. 25774/09, 21 July 2015  
*Zdjar and Others v. Croatia*, no. 80960/12, 6 July 2017  
*Zengin v. Turkey*, no. 46928/99, 28 October 2004  
*Zinatullin v. Russia*, no. 10551/10, 28 January 2020